저자미상국역구자훈해제박훈평

국역

產

室

廳

總

規

비애품 95510

9"788959"702367" ISBN 978-89-5970-236-7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산실청범례 産室廳凡例	
산실청범례 産室廳凡例	1.1
산실청총규 産室廳總規	1.2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敎)가 내려진 뒤. 胎候傳敎後	1.2.1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 設廳擇	日命下後
진후하는 날짜. 診候日字	1.2.3 1.2.2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 産室排設處所	1.2.4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 排設日	1.2.5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 設廳後擧行	1.2.6
내의의 별입직(別入直) 內醫別入直	1.2.7
매달 초하루. 逐月初一日	1.2.8
산달 하루 전날. 當朔前一日	1.2.9
산달 초. 當朔初	1.2.10
대령하는 약물. 待令藥物	1.2.11
분만이 시작될 때. 産漸時	1.2.12
분만한 뒤. 解娩後	1.2.13
3제조. 三提調	1.2.14
목욕. 洗浴	1.2.15
태를 씻음. 洗胎	1.2.16

운모고. 雲母膏	1.2.17
권초제. 捲草祭	1.2.18
별단. 別單	1.2.19
산도, 최생부, 차지법. 産圖及催生符借地法	1.2.20
분만실의 길한 방향과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安産藏胎衣吉方	
최생부. 催生符 1.2.22	1.2.21
이십사방위에 해당하는 글자. 二十四方位字	1.2.23
분만실의 길한 방향. 安産室吉方	1.2.24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藏胎衣吉方	1.2.25
명백미. 命白米	1.2.26
유척 3촌. 鍮尺三寸	1.2.27
방 안에 일유신(日遊神)이 있는 곳. 房中日遊神所在	1.2.28
○배설시 소용 물목 ○排設時所用	1.2.29
○현초문 행사에 소용되는 물목 ○懸草門所用	1.2.30
○다시 붙일 때 소용되는 물품 ○改付貼時所用	1.2.31
○태반을 씻을 때 소용되는 물품 ○洗胎時所用	1.2.32
○권초제 때 소용되는 물목 및 봉과할 때 소용되는 물목 ○捲草祭時	所用及
封褁所用	1.2.33
○서계(書啓)의 양식 ○書啓式	1.2.34
○태항아리에 매다는 홍목패(紅木牌)의 서식 ○胎缸紅木牌書式	1.2.35
○별단 서계의 서식 ○別單書啓式	1.2.36
○윤직할 때의 성기(省記) ○輪直時省記	1.2.37
○말고삐 제조법 ○馬轡製法	1.2.38
○해마와 석연자를 묶는 법 ○海馬石燕子 結紐法	1.2.39

	○뚜껑없는 함 ○無盖圅	1.2.40
	<u>○향안 ○香案</u>	1.2.41
	○대등상, 소등상 ○大登床, 小登床	1.2.42
	○큰 판자 ○大板子	1.2.43
	○말목○馬木	1.2.44
	○홍목패○紅木牌	1.2.45
	○배설(排設)할 때 소용되는 물종(物種) ○排設所用物種	1.2.46
	○의관이 문안할 때의 단자 종이 ○醫官問安單子紙	1.2.47
	○엿을 편으로 만드는 법 ○甘糖作片法	1.2.48
	○관문을 내는 서식 ○出關式	1.2.49
	○고지하여 대령한다. ○知委待令	1.2.50
	○소첩(小帖)으로 가져다 사용할 것. ○小帖取用	1.2.51
	○감결(甘結)의 봉입 ○捧甘	1.2.52
	○배설(排設)할 때의 홀기 ○排設時 笏記	1.2.53
	○산도를 고쳐 붙일 때의 홀기 ○産圖改付貼時 笏記	1.2.54
	○태반을 씻을 때의 홀기 ○洗胎時笏記	1.2.55
	○권초제(捲草祭)를 거행할 때의 홀기 ○捲草祭時笏記	1.2.56
	○직숙(直宿)을 파한 후 즉시 내보내는 관문들 ○直宿罷後	卽出關秩
	불수산 佛手散	1.2.57.1 1.2.57
	달생산 達生散	1.2.57.2
	용뇌안신환 1제 龍腦安神丸一劑	1.2.57.3
	우황고 牛黃膏	1.2.57.4

해제·출판

해제	2	2.1
일러두기	2	2.2
출판사항	2	2.3

産室廳凡例 산실청범례

一. 産室官落點後 凡草記 皆以産室醫官以都提調提調意云云事

하나. 산실청 담당 관원이 낙점된 이후에 간단한 보고서인 초기(草記)는 모두 "산실청 의관이 도제조(都提調) 또는 제조(提調)의 의견이 어떠어떠하다"라는 형식으로 써서 올린다.

一. 提調直宿 若不在排設日 而待下教之命 則仍請醫官直宿 醫官亦姑爲本院輪直之命 則無逐日問安 而只間三日問安 依前爲之事(凡問安 提調口傳 醫官詣差備單子 醫女請色掌內人爲之)

하나. 제조의 직숙(直宿)이 만약 산실청을 배설(排設)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아임금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대로 의관의 직숙(直宿)을 청한다. 의관도역시 잠시 내의원에서 윤직(輪直)하라는 어명을 수행할 때는 날마다 문안(問安)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사례처럼 단지 3일 간격으로 문안한다.(모든 문안에 대해서는 제조는 구두로 전달하고 의관은 차비문(差備門)에 나아가 단자를 올리며 의녀는 색장나인(色掌內人)에게 청하여 행한다)

一. 中宮殿産室時 症候與湯劑議定 措辭於元啓辭中 而世子嬪宮 則元啓辭中 不得問候措辭 而別爲口啓 移直時 值本院日次問安 則入直提調來參而兼行 移設所當宮問安 不得爲之事〔雖解娩後並直時 移設所不得問安 而本院元問安兼行 ○若值他殿宮症候問安時 則以此時 産室廳提調 不可專在直所 書則往來藥房之意措辭草記〕

하나. 중궁전 산실청의 경우, 증세나 탕제에 대해 의논하여 확정한 내용을 계사(啓辭) 원본에 기술한다. 그러나 세자빈궁의 경우는 계사 원본에 문후(問候)에 대한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두로 아뢴다. 이직(移直)¹할 때 5일마다 올리도록 규정된 내의원의 일차문안(日次問安)을 만나면 입직(入直)한제조가 와서 참석하여 함께 행하고, 이설소(移設所)²에서의 당궁문안(當宮問

安)³은 할 수 없다.(비록 분만한 뒤에 병직(並直)⁴할 때라도 이설소에서는 문 안할 수 없고, 내의원에서 거행하는 원래 문안과 함께 거행한다. ○만약 다른 전궁에 대해 증후 문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이러한 때에는 산실청 제 조가 직숙하는 곳에만 전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 낮에는 약방에 왕래하겠 다."고 글을 꾸며 초기를 작성한다)

一. 世子嬪宮産室時 凡草記啓目書啓禀事 世子宮亦皆入之 而若事係承批發落者則待大朝批下後 申達事(啓曰則達曰 啓目則申目 啓達則申達 凡達辭不書世子 只嬪宮云云)

하나.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 모든 초기(草記)와 계목(啓目)과 서계(書啓)로 아뢰는 일은 세자궁에도 동시에 써서 올리지만, 만약 성상의 비답(批答)을 받아 결정해야 할 사안이면 대조(大朝)의 비답이 내려진 뒤에 세자궁에 신달한다.(세자궁에 들일 문서를 작성할 때는 "계왈(啓日)"은 "달왈(達日)"로,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으로, "계달(啓達)"은 "신달(申達)"로 고쳐 쓴다. 세자궁에 올리는 모든 문서에는 "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지 "빈궁"이라고 쓴다)

一. 直宿時 舉動 則提調一員留院事禀定 而醫官書啓 傳于隨駕所 入啓事(輪直及並直時 毋論京內京外舉動 依例入禀 而或有轎前承候時禀之 或有輿前承候時 以直宿時提調一員留直所 故臣留院之意 仰達)

하나. 직숙할 때 성상께서 거둥(擧動)하시면 제조 한 사람을 내의원에 남기겠다고 품정(禀定)하고, 의관의 서계(書啓)는 어가(御駕)가 계신 곳에 전하여 입계한다.(윤직(輪直) 혹은 병직(並直)할 때는 성상께서 도성 안에서 거둥하시든 밖에서 거둥하시든 막론하고 규례에 따라 아뢰되, 어가 앞에서 문후를 여쭐때 아뢰게 되거나 수레 앞에서 문후를 여쭙게 되면 "직숙 때문에 제조 한 사람이 직소(直所)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신이 내의원에 남겠습니다."라고 아뢴다)

• 〔頭註: 戊午直宿時 永禧殿擧動前日 副提調以司謁 明日動駕時 提調一員 當

留直所矣 何提調留院事入禀 而提調留院事下教〕

- 〔두주: 무오년(철종9: 1858) 직숙(直宿)할 때에 성상께서 영희전(永禧殿)에 거 둥하시기 전날 부제조가 사알(司謁)을 통해 "내일 거둥하실 때 제조 한 사람을 직소에 남겨야 합니다. 어떤 제조를 내의원에 남길지 여쭙니다."라고 아뢰니, 제조를 내의원에 남기라고 하교하셨다)
- 〔頭註: 乙亥直宿時以司謁今日親行望拜禮時提調副提調當為進參而本院 守直何以爲之事入禀而口傳下敎于政院日提調進去副提調守直〕
- 〔두주: 을해년(고종12: 1875) 직숙할 때에 사알(司謁)을 통해 "성상께서 오늘 망배례(望拜禮)를 직접 거행하실 때 제조와 부제조가 마땅히 나아가 참석해야 하니, 내의원에서 수직(守直)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쭙니다."라고 아뢰니, 구전(口傳)으로 승정원에 "제조가 참석하고 부제조가 수직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셨다)
- 一. 提調輪直日 不拘日次 當殿別問安事〔並直初日同○醫官同〕

하나. 제조가 윤직(輪直)하는 날에는 <mark>일차문안(日次問安)⁵에</mark>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전궁에 별도로 문안을 행한다.(병직(並直)하는 첫날도 마찬가지이다. ○ 의관도 같다)

一. 解娩後七日內入直 不得交替事(待令醫女 自解娩後 至三七日 逐日三時問安 諸醫女 只朝問安後出退)

하나. 분만한 뒤 7일 이내의 입직은 다른 사람과 교체할 수 없다.(대령의녀(待 令醫女)는 분만 이후로 삼칠일까지 매일 아침·점심·저녁으로 세 번 문안하고, 나머지 의녀들은 아침 문안만 올린 후 물러난다)

一. 產圖三件 催生符三件 以朱砂印出 借地法三件 以朱砂書之 而字樣如綱目小字 大安産室吉方三件 藏胎衣吉方三件 並朱砂書之 而如產圖字樣大 二十四方位紙 方面以朱砂各書一字 字樣如產圖字書之事

하나. 산도(産圖) 3건과 최생부(催生符) 3건은 주사(朱砂)로 찍어내고, 차지법 (借地法) 3건은 주사로 쓰되 글자의 모양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綱)》의 작은 글자 크기로 한다. 안산실길방(安産室吉方) 3건과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 3건도 모두 주사로 쓰되 산도의 글자 모양과 크기로 한다. 이십사방위지 (二十四方位紙)는 방면(方面)에 주사로 각각 한 글자씩 쓰되 글자의 모양은 산도의 글자처럼 한다.

一. 剪邊空石(長參尺玖寸廣壹尺柒寸)造來事(凡尺用鍮尺)

하나. 가장자리를 잘라 낸 빈 가마니(길이 3척 9촌, 넓이 1척 7촌)를 만들어 온다.(모든 자는 유척(鍮尺)을 사용한다)

一. 捲草函(長壹尺捌寸伍分 廣壹尺 高肆寸參分 全漆 內塗紅紬)造來事

하나. 권초함(捲草函)(길이 1척 8촌 5푼, 넓이 1척, 높이 4촌 3푼. 전체를 옻칠하고 안쪽에는 붉은 비단을 바른다)을 만들어 온다.

一. 命絹十疋(每疋貳拾捌尺 ○紅紬袱褁) 命紬十疋(每疋參拾伍尺 ○紅紬袱褁) 命 白絲十斤(入盛白苧帒 ○紅紬袱褁) 命正銀一百兩(紅紬付綿甲袱褁 ○入盛紅假函) 命白米一百斗(分作拾帒 入盛白木帒來納 而捲草祭設行日 自移設所 又爲入盛白 苧帒封褁) 鍮燭臺一雙 鍮香爐一坐 鍮香盒一坐 全漆函一坐(各其司官員 臣謹封 前期一日 躬親進排) 三提調會同監捧後 各其司官員 更書臣謹封 奉置于移設所事

하나. 명견(命絹) 10필(매 필은 28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주(命紬) 10필(매 필은 35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백사(命白絲) 10근 (흰 모시 포대에 넣는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정은(命正銀) 100냥 (면갑(綿甲)을 덧댄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홍가함(紅假函)에 넣는다), 명백미(命白米) 100말(열 포대로 나누어 무명 포대에 넣어 들이고, 권초제(捲草祭)를 설행하는 날에 이설소에서 다시 하얀 모시 포대에 넣어 싸서 봉한다), 놋촛대 1쌍, 놋향로 1좌(坐), 놋향합 1좌, 전체를 옿칠한 함 1좌.(각 관청의 관

원이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써서 정한 기한 하루 전에 몸소 진배 (進排)한다) 3명의 제조가 회동하여 감독한 후에 각 관청의 관원이 다시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쓰고 그 기물들을 이설소(移設所)에 옮겨 둔다.

- ¹. 이직(移直): 장소를 옮겨 직숙한다는 뜻으로, 내의원이 아니라 차비문 근처에서 입직하는 것을 말함. ↔
- ². 이설소(移設所): 내의원의 숙직 장소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임시로 마련한 숙직 장소 ↔
- 3. 당궁문안(當宮問安): 해당 궁에 직접 나아가 문후를 여쭙는 것. ↔
- ⁴. 병직(並直): 내의원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함께 숙직하는 것. ↔
- 5. 일차문안(日次問安):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문안. ↔

産室廳總規 산실청총규



胎候傳敎後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敎)가 내려진 뒤.

胎候傳教後 毋論月數多少 禀請擇日診候〔擇日後 以某日爲吉 微禀 當日來待 亦微 禀〕仍請前期三朔排設事〔若胎候不在多朔之時 則追後限三朔前 更爲禀請○世子 嬪宮産室時 凡口達書達 世子宮亦皆入達〕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敎)가 내려진 뒤에는 달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날을 택하여 진후(診候)할 것을 품청(禀請)하고(날을 택한 뒤에 어느 날이 길한지 미품(微禀)¹하고, 그 날이 되었을 때 와서 대령하는 것도 역시 미품한다), 이어 서 산달 석 달 전에 산실청을 배설(排設)할 것을 품청한다.(만약 태후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에는 추후에 산달 석 달 이전을 기한으로 다시 품청한다. ○세자 빈궁 산실청의 경우에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모두 세자궁에도 역시 함께 아뢴다)

- ●〔頭註: 胎候傳教後 舊例則差備待令針藥醫女卽爲入診而 十日一次入診〕
- 〔두주: 태후에 대한 전교가 내려진 뒤에는, 예전의 규례에 따르면 차비대령(差備待令)하는 침약(針藥) 담당 의녀가 즉시 입진하고 10일에 한 차례씩 입진하였다)
- 〔頭註: 胎候傳教 若承於三朔之內 則卽請擇日排設 而待批下 諸般禀定 仍卽 爲之○近則某入侍時 都提調 以承候官或國舅所傳中宮殿胎候 今爲多朔云云 筵奏〕
- 〔두주: 태후에 대한 전교를 만약 산달 3개월 이전에 받들면 즉시 날을 택하여 산실청을 배설(排設)할 것을 청한 뒤에 성상의 비답(批答)이 내려오길 기다려 제반 사항을 품정(禀定)하고 곧바로 행한다. ○근래에 아무개가 입시했을 때에 도제조가 "승후관(承候官) 혹은 국구(國舅)가 전한 내용으로서 중궁전의 태후 가 지금 여러 달이 되었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¹. 미품(微稟):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아뢰는 것이다. ↔



設廳擇日命下後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

設廳擇日命下後 卽令日官推擇後 草記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오면 즉시 일관(日官)으로 하여 금 날짜를 계산하여 택하라고 한 뒤에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捲草官 政官牌招 差出〔筵奏或草記 ○甲戌 診候日入侍時 筵禀〕

○권초관은 인사담당자인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차출한다.(연석에서 아뢰거나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갑술년(고종11: 1874)에는 진후(診候)하는 날에 입시하여 연석에서 아뢰었다)

○提調 間四日問安(擇日命下日爲始) 醫官醫女 間三日問安(護産官 落點日爲始 醫女 啓目日爲始 而朔望日 則別問安) 而排設後 直宿提調及醫官醫女 逐日問安(間四日 間三日 仍爲之) 禀定

o제조는 4일 간격으로 문안하고(택일하라는 어명이 내려온 날부터 시작한다) 의관과 의녀는 3일 간격으로 문안하되(호산관(護産官)은 낙점된 날부터시작하고, 의녀는 계목(啓目)을 올린 날부터시작하는데, 초하루와 보름에는별도로 문안한다), 산실청을 배설(排設)한 뒤로는 "직숙제조와 의관·의녀는매일 문안(제조가 4일 간격으로 문안하고 의관과 의녀가 3일 간격으로 문안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하는 것을 품정(禀定)한다.

- 〔頭註: 未蒙設廳之命 而若先入診 則醫女問安 設廳命下前 五日日次爲之事〕
-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입진(入診) 해야 한다면 의녀가 문안하고, 산실청 설치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5일마다 하는 일차문안을 거행한다)
- 〔頭註: 設廳吉日, 若多則以某日某日俱吉云 以何日舉行之意 措辭〕

- (두주: 산실청을 설치할 만한 길일이 많으면 "어느 날 어느 날이 모두 길하다고 하니 어느 날에 거행합니까?"라고 문장을 작성한다)
- 〔 頭註: 捲草官有實病 則陳疏遞改 而有關代 令政院政官牌招 開政差出草記〕
- (두주: 권초관(捲草官)에게 실제로 병이 있으면 그를 체차(遞差)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고, 빈 자리를 채울일이 있으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정관을 패초
 (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차출해달라는 내용으로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 〔頭註: 輪直時 入直提調 雖逐日問安 他提調 間四日問安 仍爲之〕
- 〔두주: 윤직(輪直)할 때에 입직하게 된 제조는 비록 날마다 문안하지만, 다른 제조들은 4일 간격으로 문안하는 규례를 그대로 거행한다〕
- 〔頭註: 世子嬪宮産室時 設廳命下日 三提調當宮問安 醫官則當宮及世子宮問安〕
- 〔두주: 세자빈궁의 산실청의 경우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날에 3 제조는 해당 궁에 문안하고 의관은 해당 궁과 세자궁에 문안한다〕

診候日字 진후하는 날짜.

診候日字 令日官推擇後 以某日舉行事入禀

진후하는 날짜는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계산하여 선택하게 한 뒤에 "모일에 거행하겠다."고 아뢴다.

○産室醫官長望單子(御醫二望議藥同參二望)書入受點(丁亥則差定後草記○落點後當殿宮問安)

○산실청 의관은 **장망단자(長望單子)**¹(어의(御醫) 2명과 의약동참(議藥同參) 2명)를 써서 들여 낙점을 받는다.(정해년(순조27: 1827)에는 산실청 의관을 정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렸다. ○낙점을 받은 후에는 해당 **전궁(殿宮)**²에 문안한다).

○借地法 當殿宮姓氏 依例書之事 筵禀(甲戌 診候日入待時 禀定)

o"차지법(借地法)에 의거하여 해당 전궁(殿宮)의 성씨를 규례대로 쓰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갑술년(고종11: 1874)에는 진후하는 날에 입시하였을 때 아 뢰어 결정하였다)

○別入直醫官 別掌務官 依例自本院差出事 禀定後 草記(別入直醫官 則三廳合七員 或五員 或三廳各一員 而別掌務官則 堂下醫官中 行首一員差出)

이 별입직의관(別入直醫官)과 별장무관(別掌務官)을 규례대로 본원에서 차출하겠다."고 품정(禀定)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린다.(별입직의관은 삼청(三廳)에서 도합 7명 또는 5명을 차출하는데, 혹은 삼청(三廳)에서 각 1명씩 차출하기도 한다. 별장무관은 당하관(堂下官)에 해당하는 의관 중에서 행수(行首) 1명을 차출한다)

○書員(四人)醫女(二名)差定事 啓目(丁亥以後草記 ○書員則或五人或六人)

o서원(書員)(4명)과 의녀(2명)을 차출하여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계목(啓目)을 올린다. (정해년(순조27: 1827) 이후로는 초기(草記)로 작성한다. ○서원 (書員)은 5명 또는 6명으로 하기도 한다)

○排設時及捲草時所用物種 依例捧上事 啓目〔允下後 卽爲捧甘各司〕

○산실청을 설치할 때와 권초제(捲草祭)를 행할 때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규례 대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계목(啓目)을 올린다. (윤허가 내려온 뒤에 즉시 담 당 관청에 각각 감결(甘結)을 보낸다)

○禁忌方單子 逐月入節前一日 自雲觀入啓事 分付該監事

○금기하는 방향을 기록한 단자는 매달 절기에 드는 날 하루 전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입계(入啓)하도록 해당 관청에 분부한다.

●已上 並擇日命下日 擧行

- •이상의 일들은 모두 택일(擇日)하라는 어명이 내려온 날에 거행한다.
- 〔頭註: 診候日 率醫官來待禀○入侍記修正 而醫女俱官服 入診待令〕
- 〔두주: 진후(診候)하는 날에는 "의관을 인솔하여 대령했다."고 아뢴다. ○입시기(入侍記)를 수정할 때 의녀는 모두 관복을 입고 입진(入診)하여 대령한다)
- ●〔頭註: 診候日字禀則令政院出朝報○診候日每有時原任大臣承候入侍時藥 房三提調同爲入侍傳教○己巳診候後中宮殿湯劑以達生散議定自今日煎入 事口啓〕
- 〔두주: 진후(診候)하는 날짜를 아뢰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보(朝報)에 내게 한다. ○진후하는 날에는 매번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문후를 여쭙기 위해 입시할 때에 약방의 3제조도 함께 입시하라고 전교한다. ○기사년(고종6: 1869)에는 진후한 뒤에 중궁전에 올리는 탕제를 달생산(達生散)으로 의논하여 결정하고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겠다고 구두로 아뢰었다)

- 〔頭註: 辛未 近因下教 産室醫官 只以有術業人長望入之 蒙点 ○戊午 別掌武官 病代 改差下事 微禀 ○近改差草記〕
- 〔두주: 신미년(고종8: 1871) 근래에는 하교에 따라 산실청 의관을 의술이 뛰어 난 자로만 장망단자(長望單子)를 들여 낙점을 받도록 하였다. ○무오년(철종9: 1858)에는 별장무관(別掌武官)의 신병 때문에 개차(改差)해달라고 넌지시 아 뢰었다. ○근래에는 개차한 일을 초기하였다)
- 〔頭註: 排設物種 並前期 各其司官員領納 提調監捧〕
- (두주: 산실청을 배설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기일에 앞서 각 해당 관청의 관원들이 가지고 와서 들이고, 제조가 봉납하는 것을 감독한다)
- 〔頭註: 禁忌方單子 設廳命下後 依例入之 而逐月改付標以入〕
- (두주: 금기하는 방향을 기록한 단자는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 규례에 따라 들이고, 매달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에 찌를 붙여 들인다)
- ¹. 장망단자(長望單子): 인재를 구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을 추천한 명단을 말한다. 합당한 사람을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조리 기명하기 때문에 장망이라고 한다. ↔
- ². 전궁(殿宮): 중궁전의 경우 당전문안으로, 세자빈궁인 경우에는 당궁문안 으로 표현한다. ↔

産室排設處所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

産室排設處所及待令醫官入直處所 並前期一二日入禀事(國恤時 則以産室待令承 傳色次知內官以下服色借吉舉行事 入禀 ○戊午)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와 대령하는 의관이 입직하는 장소는 모두 기일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아뢴다.(국상(國喪)이 발생했을 때에는 산실청의 대령승전 색(待令承傳色)과 담당 내관 이하의 복색을 **차길(借吉)**¹하여 거행하겠다고 아 뢴다. ○무오년(철종9: 1858)의 일이다²)

- 1. 차길(借吉) : 길례 때에 임시로 길복을 입는 것이다. ↔
- ². 철종 8년(丁巳 : 1857) 8월에 대왕대비인 순원왕후 김씨가 승하한 이듬해 인 무오년에 산실청이 배설되었을 때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

排設日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

排設日 護産官以今日某時排設之意 書啓(時刻單子 奏時官入啓 正時漏局入之 凡奏時同)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는 호산관(護産官)이 오늘 모시에 설치하겠다고 서계 (書啓)한다. [시각 단자는 주시관(奏時官)이 입계한다. 정시에 보루각(報漏閣)에서 들이는데, 시각을 보고하는 모든 경우는 이와 같이 한다)

○三提調看審排設之意 副提調以司謁入禀

o3제조가 산실청의 설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부제조가 사알(司謁)을 통해 아뢴다.

○排設時擧行節次(見日記)

○산실청을 설치할 때 거행하는 절차(일기에 보인다)

○排設時 以懸草門何門爲之之意 禀旨(或排設處所入禀時 同禀)

○산실청을 설치할 때 현초문(懸草門)을 어떤 문으로 할지에 대해 아뢰어 결재를 받는다.(혹은 산실청을 설치할 장소를 아뢸 때 동시에 아뢰어 결재를 받기도 한다)

○待令書員醫女 居接于醫官直所近處事 以司謁入禀

○대령서원(待令書員)과 의녀가 의관의 직숙소(直宿所) 근처에서 잠시 거주한 다고 사알(司謁)을 통해 아뢴다.

○眞諺貼冊(吉方及禁忌節次)各三件(見日記 紅紬二幅袱褁)海馬石燕子各一雙 (各眞紅唐絲三甲纓子結紐 先心封書當殿宮進上海馬石燕子各一雙 臣謹封)並入 干大殿差備(世子嬪宮産室時 各貼冊各三件式 入干大殿 世子宮嬪宮 諺書各差備) o한문 첩책(貼冊)과 한글 첩책(길한 방향 및 금기 절차를 적는다) 각 3건(일기에 보인다. 붉은 비단으로 된 2폭의 보자기로 싼다), 해마와 석연자 각 1쌍(각각 진홍색 중국 명주로 꼰 세겹 끈으로 매듭을 만들되, 우선 가운데를 봉하고 "해당 전궁에 해마와 석연자 각 1쌍을 올립니다.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을 모두 대전에 들여 차비(差備)한다.(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각 첩책을 각각 3건씩을 대전에 들이고, 세자궁과 세자빈궁에 한글 첩책을 각 차비한다)

○排設後 各殿宮 三提調口傳問安(古例則只大殿當殿宮問安) 護産官三廳醫官 當殿宮 單子問安(醫女問安亦爲之 後同)

○산실청을 설치한 뒤에 각 전궁에 3제조가 구전문안(□傳問安)하고(옛 규레에 따르면 대전과 해당 전궁에만 문안한다), 호산관(護産官)과 3청 의관은 해당 전궁에 단자로 문안한다.(의녀의 문안도 또한 거행한다. 이후로도 같다)

○當殿宮診候 禀旨舉行(至解娩前 間間請診)

o해당 전궁에 대한 진후(診候)를 품지(禀旨)한 뒤에 거행한다.(분만 이전까지 간간이 진후를 청한다)

○提調以下依例直宿事 草記〔世子嬪宮 則直請移直 ○近則排設日有三提調入侍之命 而設廳在於當朔 則三提調自今日並直 承候官亦爲別入直事 筵禀 而又以待令醫官亦自設廳日並直 而前或因下教有姑爲輪直之時 而今番則自今日使之依例並直事 筵禀〕

○제조 이하로는 규례에 따라 직숙(直宿)한다고 초기(草記)한다.(세자빈궁의 경우 곧장 이직(移直)을 청한다¹○근래에는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3제조에 게 입시하라는 어명이 있었는데, 산실청의 설치가 산달에 있었으니 3제조가 오늘부터 모두 직숙하고 승후관(承候官)도 또한 별도로 입직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² 또,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부터 대령의관(待令醫官)도 모두 직숙

하게 했는데, 이전에는 간혹 성상의 하교(下敎)에 따라 잠시 윤직할 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모두 직숙하게 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 ●〔頭註:排設日每有時原任大臣承候入侍時藥房三提調同爲入侍傳教〕
-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매번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문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약방의 3제조도 함께 입시하라고 전교하였다)
- 〔頭註: 排設日三提調來待差備門外〕
-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3제조는 차비문(差備門) 밖에 와서 대기한다〕
- 〔頭註: 自排設日請診後 至解娩前 間間請診 而至臨朔以後 則亦以議定當進湯劑之意 兼爲措辭 入禀〕
-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진후를 청한 이후로 분만 이전까지 간간이 진후를 청하고, 산달이 된 이후로는 진후를 청하는 동시에 "어떤 탕제를 올려야하는지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라고 문장을 꾸려서 아뢴다)
- 〔頭註: 眞諺貼冊及海馬石燕子入盛一盤〕
- 〔두주: 한문 첩책(貼冊)과 한글 첩책 및 해마와 석연자를 한 쟁반에 담는다〕
- ●〔頭註: 直宿 若有姑勿爲之之命 則待其命下之日 以依下教直宿之意 措辭草記或有入侍時命下 則出榻教 ○若承提調姑勿輪直之命 則仍請醫官輪直 而提調輪直命下後 更請醫官並直 ○提調輪直若不在排設日 則輪直初日 不拘日次 當殿 三提調別門安 至並直初日 亦如之 ○護産官 雖於排設後 若有本院輪直 或姑爲本院元入直之命 涿日問安不爲之 只間三日問安 依前爲之〕
- (<mark>두주:</mark> 직숙(直宿)의 경우, 만약 당분간 직숙하지 말라는 어명이 있으면 그 어명이 내려온 날에 "하교에 따라 직숙하겠습니다."라고 문장을 꾸려서 초기(草記)한다. 혹 입시했을 때 어명이 내려지면 <mark>탑교(榻敎)³를 낸다. ○만약 제조에게 당분간 윤직하지 말라는 어명이 내려지면 의관으로 윤직하게 할 것을 청하고, 제조에게 윤직(輪直)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는 다시 의관도 모두 병직(並</mark>

直)하게 할 것을 청한다. ○제조의 윤직이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윤직한 첫날에 문안이 규정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전궁에 나아가 3 제조가 별도로 문안한다. 병직하는 첫날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호산관은 비록 산실청을 설치한 뒤라도 만약 본원에서의 윤직이 있거나 혹 당분간 본원에서 원입직(元入直)하라는 어명이 있으면 매일 하는 문안은 하지 않고 3일 간격으로 하는 문안을 이전처럼 거행한다)

- 〔頭註: 英宗朝庚午 各其司官員待令事下教 而仍以承傳色摘奸捧擧案 各司闕 点官員 並拿勘〕
- 〔두주: 영조 경오년(英祖26: 1750)에 각 관청의 관원들을 대령하라고 하교하였다. 이어서 승전색(承傳色)에게 적간(摘奸)하여 거안(擧案)⁴을 올리게 하고, 점고(點考)에 빠진 각 관청의 관원들을 모두 의금부에 잡아들여 조처하였다)
- ¹. 세자 빈궁의 경우 산실청의 설치 장소가 곤전(坤殿)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을 청하는 것이다. ↔
- ². 고종 8년(1871) 10월 7일 승정원일기에 도제조 이유원(李裕元)이 연품한 기사가 나온다. ↔
- 3. 탑교(榻敎) : 임금이 정승에게 직접 내린 명령 ↔
- 4. 거안(擧案) : 공회(公會)에 참여하는 자의 명함. ↩

設廳後擧行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

設廳後擧行 各司例爲待令事 筵禀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은 각 관청이 규례에 따라 대령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副提調入直時 若值政院備員公故 勿令進參事 筵禀

○부제조가 입직(入直)할 때 만약 승정원의 비원(備員)에게 공무가 있는 상황 이면 진참(進參)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연석에서 아뢴다.¹

○醫官書員 依例供饋事(只視醫官直宿)草記

o"의관과 서원(書員)에게 규례대로 공궤(供饋)하겠다고(의관이 직숙할 때의 규정을 보라) 초기(草記)한다.

●已上 並排設日擧行

•이상은 모두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거행한다.

¹. 고종 8년(1871) 10월 7일 승정원일기에 도제조 이유원이 연품한 기사가 나 온다. ↔

內醫別入直 내의의 별입직(別入直)

內醫別入直 自提調輪直日爲始 別掌務官 自護産官並直日爲始 書員 亦護産官直宿日爲始 而並直則自當朔爲之(雖當朔 護産官若輪直 則亦輪直)醫女 自護産官輪直日並宿 而夕問安則自護産官並直日爲之 護産官 自並直翌日朝夕 書啓事(輪直時無書啓)

내의가 별입직(別入直)하는 것은 제조가 윤직(輪直)하는 날로부터 시작하고, 별장무관(別掌務官)이 별입직하는 것은 호산관이 병직(並直)하는 날로부터 시작한다. 서원(書員)도 또한 호산관이 직숙(直宿)하는 날로부터 별입직을 시 작하는데, 병직은 산달로부터 한다.(비록 산달이라도 호산관이 윤직하면 서원 도 역시 윤직한다) 의녀는 호산관이 윤직하는 날로부터 병숙하고, 저녁 문안 은 호산관이 병직하는 날로부터 한다. 호산관은 병직하는 다음날부터 조석(朝 夕)으로 서계(書啓)한다.(윤직할 때에는 서계하지 않는다)

- 〔頭註: 若有醫官並直之命則待令醫官別掌務官姓名省記中列書軍士四名並 爲省記○醫官雖並直書員則輪回入宿而當朔三提調並直後並皆入宿諸員五 名亦爲省記〕
- (두주: 만약 의관에게 병직하라는 어명이 있으면 대령의관(待令醫官)과 별장 무관(別掌務官)의 성명을 <mark>성기(省記)¹에 나열하여 기록하고, 군사 4명도 함께 기록한다. ○의관이 비록 병직하더라도 서원은 돌아가면서 입숙(入宿)하고, 산 달에는 3제조가 병직한 뒤에 서원(書員)도 함께 모두 입숙하며, 모든 서원 5명 의 성명도 역시 기록한다)</mark>
- 〔頭註: 輪直時省記 醫官二員式 書員二人式 醫女二名 使令二名 軍士二名式〕
- 〔두주: 윤직할 때의 성기(省記)는 의관 2명씩, 서원 2명씩, 의녀 2명, 사령 2명, 군사 2명씩으로 한다)
- ●〔頭註: 護産官 自並直翌日 朝夕書啓 而若有症候與湯劑如達生散 則並爲措辭

於書啓中 凡有藥物封入之事 亦皆書啓〕

• (두주: 호산관은 병직한 다음날부터 조석으로 서계(書啓)하는데, 만약 병세의 진후가 있거나 달생산 같은 탕제를 올리는 일이 있으면 모두 서계 가운데 서술 한다. 약물을 봉입(封入)하는 모든 경우에 역시 모두 서계한다)

1. 성기(省記): 병조에 입직한 낭관이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각 문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열기하여 승정원을 거쳐서임금에게 올리는 기록. ↔

逐月初一日 매달 초하루.

逐月初一日 産室排設移鋪(奏時 排設時同) 而前一日 某時舉行事 書啓 及當日舉行事(並見日記○提調及泛鐵官擇日官 待令于差備門外矣 丁亥則依下令並入參○移鋪後 只護産官 當殿宮問安)

매달 초하루에 산실에 배설(排設)한 물품을 옮겨서 진열한다.(시각을 아뢰는 것은 산실청을 배설할 때와 똑같이 한다) 그 하루 전날에 모 시에 거행하겠다고 서계(書啓)를 올리고 당일에 거행한다.(모두 일기에 보인다. ○제조와 범철 관(泛鐵官)、택일관(擇日官)은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대령한다. 정해년(순조27: 1827)에는 내려진 하명에 따라 함께 입참(入參)했다. ○옮겨 배설한 뒤에는 단지 호산관만 해당 전궁에 문안한다)

若閏月則不爲移鋪之意入禀事(若越朔則即初一日書啓而仍改付之例)

만약 윤달이라면 옮겨 배설하지 않겠다고 아뢴다.(만약 달이 넘어가면 즉시 초하루에 서계(書啓)하고 고쳐 붙이도록 한 규례에 따른다)

當朔前一日 산달 하루 전날.

當朔前一日 三提調及戚臣別入直 醫官別入直 自明日依例並直事 草記〔當殿宮 提調及醫官逐日一次問安 與輪直時同 而產漸時及或有症候時 則朝夕問安〕

산달 하루 전날에 3제조와 척신(戚臣)이 별입직한다. 의관의 별입직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규례에 따라 병직하겠다고 초기(草記)한다.(해당 전궁에 제조와의관이 매일 한차례 문안하는 것은 윤직할 때와 마찬가지이고, 분만의 기미가 있거나 병세의 증후가 있을 때에는 조석으로 문안한다)

○奏時官亦居接於差備近處之意 入禀事(近則設廳在於當朔 故設廳日入禀)

○주시관(奏時官)도 차비문 근처에서 임시로 거주하겠다고 아뢴다.(근래에는 산달에 산실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산실청을 설치한 날에 아뢴다)

- 〔頭註: 戊午 傳日產圖改貼時 三提調留差備外 只醫官等入來移舖〕
- 〔<mark>두주</mark>: 무오년(철종9: 1858)에는 "산도(産圖)를 고쳐 붙일 때 3제조는 차비문 밖에 머물고, 단지 의관 등만 들어와서 옮겨 배설하라."고 전교(傳敎)하였다〕
- 〔 <mark>頭註</mark>: 自設廳命下後 若值朔望日 則不拘日次 當宮醫官醫女別問安 而産改貼後 亦爲問安〕
-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 만약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날짜가 규정된 일차문안(日次問安)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궁에 의관과 의녀가 별도로 문안하고, 산도(産圖)를 고쳐 붙인 후에도 또한 문안한다)
- 〔頭註: 當朔旣届 則三提調雖已輪直 更請並直 至解娩日 又請移院直宿 而並直與移直 皆以草記或筵奏○並直稟請 而若未蒙允 則至解娩日並直 而仍請移直 ○承候戚臣別入直 待當朔 三提調並直草記中 同爲禀旨 省記 自本院爲之〕
- 〔두주: 산달에 이르면 3제조가 비록 이미 윤직(輪直)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병 직(並直)하겠다고 청하고, 분만하는 날짜가 되면 다시 원(院)을 옮겨 직숙하겠

다고 청하는데, 병직이든 이직(移直)이든 모두 초기(草記)하거나 연석에서 아뢴다. ○병직하겠다고 아뢰어 청했으나 만약 윤허를 받지 못했으면 분만일까지병직하고, 분만일에 이직을 청한다. ○문후를 여쭙는 척신의 별입직(別入直)은산달을 기다리되, 3제조가 병직하겠다고 청하는 초기에 함께 아뢴다. 성기(省記)는 본원에서 작성한다)

- 〔頭註: 戊午入診入侍時 都提調請幷直 上曰都提調元老大臣 間間入直 可也〕
- 〔두주: 무오년(철종9: 1858)에 입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도제조가 병직(並直)하겠다고 청하자, 성상이 "도제조는 원로대신이니 간간이 입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 〔頭註: 癸酉并直時 差備招掌務官 傳曰藥院三提調 家有事故 則輪回畫出事下 教〕
- 〔두주: 계유년(고종10: 1873)에 병직할 때 차비관(差備官)이 장무관(掌務官)을 불러 "'약원의 3제조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낮에 나가고 밤에 직숙하게 하라.'고 하교하셨다"고 전하였다)
- 〔 <mark>頭註:</mark> 戊午當朔 入診入侍時 都提調 以醫官三人別入直 加差下事 筵禀後 草 記〕
- 〔두주: 무오년(철종9: 1858) 산달에 입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도제조가 의관 3명을 별입직으로 가차(加差)할 것을 연석에서 아뢴 뒤에 초기(草記)하였다)

當朔初 산달 초.

當朔初三提調以某殿宮誕彌之月請診候議定湯劑(每以達生散)及臨産時預備藥料製入事入禀(預備藥則近以設廳在於當朔故設廳日入禀後並入之)

산달 초에 3제조가 "모 전궁의 <mark>탄미월(誕彌月)¹이므로 진후할 것을 청하고, 탕</mark>제(매번 달생산으로 한다) 및 분만할 때 필요한 예비약물을 만들어 들이겠다고 아뢴다.(예비약물은 근래에는 산실청을 산달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실청을 설청하는 날에 아뢴 뒤에 아울러 들인다)

○佛手散(本方 加益母草 二菱) 五貼(先心封書當殿宮進上佛手散五貼 臣謹封 方文書入 ○方文書式 當歸六箋 川芎四戔 益母草二戔 右作一貼 水一升二合 臨熟 入酒少許 煎至四合 去滓 不拘時 溫進) 人蔘正末(羅參) 三錢重一封 二錢重一封(先心封書當殿宮進上人參正末三錢重一封二錢重一封 臣謹封○辛未 因大院位分付 只以三錢重製入○作末時 石研沙椀 篩次苧布七寸 雉羽板紙) 進御節次書啓 入于大殿當殿宮(諺書 下同) 黃連甘草湯 一貼(唐黃連甘草 各二錢○外幅周封 只書謹封) 蜜朱砂(煉蜜 如胡桃大 和水飛朱砂三分重 盛小沙盒 付小紙周封 只謹封) 胡桃肉(溫水去皮 碎之篩 如胡桃大 盛小沙盒 付小紙周封 只謹封) 已上 若越朔則更爲製入 而以製入者日久故又入之之意 微禀 且佛手散,則產漸時 或自本院煎入 白清 二升(盛沙鉢 幅中只書白清 南北端 書臣着啣) 白絹 一尺(周封 書胡桃肉褁次 白絹一尺 只謹封) 白鼎紬 一尺(周封書 黃連甘草湯拭口次 白鼎紬一尺 只謹封) 拭口法抹朱砂法胡桃含口法 合書諺單一張 並入事(紙用草注紙四絶 一絶摺 作八貼單子)

○불수산(본래 처방에 익모초 2돈을 더한다) 5첩.(우선 가운데를 봉하고 "해당 전궁에 불수산 5첩을 올립니다.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쓰고 약방문 을 써서 들인다. ○약방문의 서식은 "당귀 6돈, 천궁 3돈, 익모초 2돈을 1첩으로 하여 물 1되 2홉을 넣고 끓을 때 술을 조금 넣고, 4홉이 될 때까지 달인 후에 찌 꺼기를 제거하고,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할 때 올린다."라고 쓴다) 매우 고운 인삼가루(나삼(羅參)을 쓴다) 3돈쭝 1봉, 2돈쭝 1봉.(우선 가운데를 봉하

고 "해당 전궁에 매우 고운 인삼가루 3돈쭝 1봉과 2돈쭝 1봉을 올립니다. 신 아 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 ○신미년(고종8: 1871)에 흥선대원군의 분부 에 따라 단지 3돈쭝 짜리로만 지어서 올렸다. ○가루를 낼 때는 돌로 만든 약연 (藥硏), 사기그릇, 체로 거를 때 쓸 모시포 7촌, 꿩깃, 판지를 사용한다) 진어 (進御)하는 절차를 서계(書啓)하여 대전과 해당 전궁(한글로 쓴다. 아래도 같 다)에 들인다. 황련감초탕 1첩.(당황련과 감초 각 2돈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 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밀주사.(꿀을 고아서 호도만한 크기로 만들고, 그것을 미세한 분말로 만든 주사 3푼쭝과 합하여 작은 사기그릇에 담 은 후 작은 종이로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호 도육.(따뜻한 물에 담궈서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체에 내린 뒤에 호도만한 크기로 만들어 작은 사기그릇에 담고 작은 종이로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이상의 약물은 만약 달을 넘기면 다시 만들어 들이는데, "만들어 들인 날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들인다."고 넌지시 아 뢴다. 또한 불수산은 분만이 임박했을 때 들이거나 혹 내의원에서 달여서 들이 기도 한다. 백청(白淸) 2되.(사밤에 담아서 감싸는 천 가운데에 "백청"이라고 만 쓰고, 남북쪽 끝에 "신 아무개"라고 이름을 쓰거나 수결을 한다) 백견(白絹) 1척.(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호도육을 포장하기 위한 백견 1척"이라고 쓴 뒤에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백정주 1척(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황 련감초탕으로 입안을 닦기 위한 백정주 1척"이라고 쓴 뒤에 "삼가 봉합니 다."라고만 쓴다) 식구법(拭口法)², 주사를 바르는 법, 호도를 입에 머금게 하 는 법을 1장의 언문 단자로 써서 함께 들인다.(종이는 초주지(草注紙) 4절을 쓰는데, 1절마다 접어 8첩 단자를 만든다)

- 〔頭註: 佛手散及方文 人參正末 黃連甘草湯 白鼎紬 入盛一盤 蜜朱砂 胡桃肉及白絹 白清 諺書單子 入盛一盤〕
- 〔두주: 불수산과 약방문、매우 고운 인삼가루、황련감초탕、백정주는 하나의 쟁반에 담고, 밀주사、호도육、백견(白絹)、백청(白淸)、언문단자는 또다른 쟁반에 담는다〕

1. 탄미월(誕彌月): 산달이 찼다는 뜻이다. ↔

². 식구법(拭口法):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드러운 솜으로 입안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방법. ↔



待令藥物 대령하는 약물.

待令藥物

대령하는 약물

〔加益母草二錢佛手散 加桃仁泥酒紅花各 錢芎歸散 紫蘇飲 楡白皮湯 牛膝湯 失笑 散 滑石末 木麥末 白扁豆末 花蘂石煅末 伏龍肝末 萆麻仁 萆麻莖 清蜜 眞油 鷄卵 生薑 生葱 並預備待令于差備直所〕

(익모초 2돈을 더한 불수산, 찧은 도인과 술을 뿌려 불에 말린 홍화를 각각□ 돈을 더한 궁귀산, 자소음, 유백피탕, 우슬탕, 실소산, 활석 가루, 목맥 가루, 백 편두 가루, 화예석을 불에 달궈 낸 가루, 복룡간 가루, 아주까리 씨, 아주까리 줄기, 청밀(淸蜜), 참기름, 계란, 생강, 생파를 모두 미리 준비하여 차비문 근처 의관 직소(直所)에 대령해 둔다)

産漸時 분만이 시작될 때.

產漸時 護産官隨症候 書啓 自解娩後 當殿宮氣候羹飯進藥之節 及阿只氏吮乳大小便之由 當日則逐時書啓 自翌日 自朝至夕間一時 書啓 自第四日至七日 朝間二時書啓 七日後則護産官雖仍直 無書啓事

분만이 시작될 때에 호산관(護産官)이 증후에 따라 서계(書啓)한다. 분만 이후로는 해당 전궁의 신체 상태, 음식, 복용하는 약의 상황 및 아기씨의 수유, 대소변의 상태를 분만 당일에는 매시마다 서계하고, 다음날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각마다 서계하며, 제4일부터 7일까지는 아침나절 2시각마다 서계하고, 7일 이후로는 호산관이 비록 그대로 직숙하고 있더라도 서계하지 않는다.

- 〔頭註: 有產漸則口啓請診○醫官入診後 議定湯劑則入禀後 製入與煎入 出榻教入諺禀○凡產室湯劑人蔘則以羅蔘入之〕
- 〔두주: 분만이 임박하면 구두로 아뢰어 입진(入診)하기를 청한다. ○의관이 입 진한 뒤로는 탕제를 의논하여 결정하면 아뢴 뒤에 조제하여 올리거나 달여서 올리는데, 이에 대해 탑교(榻敎)를 내면 언문으로 써서 여쭌다. ○산실에 들이는 탕제에 넣는 인삼은 모두 나삼(羅蔘)으로 들인다)

解娩後 분만한 뒤.

解娩後 某殿宮 今日某時刻 誕生某阿只氏 胞衣順下之意 各殿宮(內殿 諺書) 並卽書啓

분만한 뒤에는 "모 전궁에서 오늘 모 시각에 모 아기씨를 탄생하였고, 태반이 순조롭게 내려왔다."고 각 전궁(내전에는 한글로 쓴다)에 함께 즉시 서계(書 啓)한다.

○安胎次 四耳內白缸一坐 盖具 即令醫女入之 而胎缸安於某方之意 書啓于大殿當 殿宮

○태반을 안치하기 위한, 뚜겅이 있고 네 귀가 붙어있는 백자 항아리 1좌를 즉시 의녀로 하여금 들이게 하고, 태항아리를 모 방향에 안치한다고 대전과 해당 전궁에 서계(書啓)한다.

○護産官書員醫女詣差備門外 以捲草出給之意微禀〔無盖函 入之〕 待奉出 與次知 內官眼同縣于縣草門

○호산관·서원(書員)·의녀가 차비문 밖으로 나아가 권초(捲草)를 내어가겠다고 넌지시 아뢰고(뚜껑이 없는 함을 들인다), 받들어 나오기를 기다려 담당내관과 함께 현초문(懸草門)에 거는 것을 안동(眼同)한다.

○大殿各殿宮 三提調 □傳問安 三廳醫官 單子問安 護産官 大殿當殿宮 單子問安

○대전과 각전궁에 대해 3제조는 구전으로 문안하고, 3청 의관은 단자로 문안 하며, 호산관은 대전과 해당 전궁에 단자로 문안한다.

○三提調請對入侍時 提調以洗胎第三日依例爲之之意 禀定〔或請承傳色 入禀〕

○3제조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했을 때 제조가 "아기씨가 태어난 지 3일째에 규례대로 세태(洗胎)를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품정(禀定)한다.(혹은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입품(入禀)하기도 한다)

○移直草記

○장소를 옮겨 직숙하겠다고 초기한다.

○乾古刀魚 三十箇〔書中宮殿進上 提調監封 入紙囊 盛木盤〕

○말린 고등어 30개.("중궁전에 진상한다."라고 쓴다. 제조가 검사하고 봉한 뒤에 종이주머니에 넣고 나무 소반에 담는다)

●已上 並解娩日擧行〔虎頭 知委〕

- •이상은 모두 분만일에 거행한다.(호랑이 머리뼈를 준비하라고 명령 · 고지한다)
- 〔頭註: 庚戌己巳丁亥洗胎 因下教第七日爲之〕
- 〔두주: 경술년(정조14: 1790), 기사년(순조9: 1809), 정해년(순조27: 1827)의 세 태는 하교에 따라 탄생한 지 7일째에 하였다〕
- 〔頭註: 入侍時 捲草官引儀齋宿於闕中事 筵禀 ○或請承傳色 入禀〕
- 〔두주: 입시할 때 권초관(捲草官)과 인의(引儀)가 궐 안에서 재계하고 직숙하 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혹은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입품하기도 한다)
- 〔頭註: 移直草記中 昌德宮 每以司饔院 而景福宮 則思政門近處事 入啓〕
- 〔두주: 장소를 옮겨 직숙하겠다는 내용의 초기 중에 창덕궁은 매번 사옹원으로, 경복궁은 사정문(思政門) 근처로 이직하겠다고 입계한다〕
- 〔 <mark>頭註</mark>: 解娩後七日內値日次 則元啓辭中 不書各殿 只書聖體若何 中宮殿元子 宮氣候 而各殿則 口傳問安 ○若値昨日洗浴時 則以元子洗浴萬安措辭〕
- 〔두주: 분만한 뒤 7일 이내에 날짜가 규정된 일차문안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원계사(元啓辭) 안에 각 전에 대해 쓰지 않고, 다만 성상의 옥체가 어떠한지와 중

궁전과 원자궁(元子宮)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만 쓰며, 각 전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문안한다. ○만약 어제가 세욕(洗浴)하는 때였으면 "원자께서 세욕 후에 매우 평안합니다."라고 글을 쓴다)

- 〔 <mark>頭註:</mark> 解娩前 或有別入直醫官加差下事 筵禀 而解娩後 亦有三廳醫官中 小 兒醫御醫差下 使之輪回入直事 筵禀〕
- 〔두주: 분만 전에 혹 별입직(別入直)할 의관을 더 차하(差下)할 일이 있으면 연석에서 아뢴다. 분만 뒤에도 또한 3청 의관 중에 소아의(小兒醫)와 어의(御醫)를 차하하여 돌아가면서 입직하게 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三提調 3제조.

三提調自當日至七日朝 大殿 朝夕啓辭 各殿宮 朝夕口傳問安 二三七及百日 並同一七 護産官自當日至七日朝 大殿當殿宮 朝夕問安 二三七及百日 並同一七 三廳醫官當日至一二三七日及百日 並各殿宮 問安(元子誕降時 自當日朝夕啓辭 亦有元子宮 問候 護産官三廳醫官 一二三七日及百日 亦元子宮 問安)

3제조는 분만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대전(大殿)에는 조석으로 계사(啓辭)하고, 각 전궁에 조석으로 구전으로 문안하며,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는 7일과 동일하게 한다. 호산관(護産官)은 분만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대전과 해당 전궁에 조석으로 문안하고,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는 7일과 동일하게 한다. 3청 의관은 분만 당일부터 7일, 14일, 21일 및 백일에 모두 각 전궁에 문안한다. (원자가 탄생했을 때에는 당일부터 조석으로 계사하고, 또한 원자궁(元子宮)에 문후한다. 호산관은 3청 의관은 7일, 14일, 21일 및 백일에 역시 원자궁에 문안한다)

○世子嬪宮解娩時 三提調 各殿宮 口傳問安 仍自當日至七日朝 大殿世子宮 朝口啓當宮 朝夕口傳問安 一二三七日及百日 並同當日 而各殿宮問安 護産官自當日至七日朝當宮 朝夕問安 二三七日及百日 並同一七 而三廳醫官問安 並如上例事〔元孫誕降時自當日口啓 亦元孫宮問候 護産官三廳醫官 並如元子誕降時例而問安〕

이세자빈궁이 분만했을 때에 3제조는 각 전궁에 구전으로 문안하고,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대전과 세자궁에 아침으로 구계(口啓)하고, 해당 궁에 조석으로 구전으로 문안한다. 7일, 14일, 21일 및 백일에는 모두 출산 당일과 동일하게 하고 각 전궁에 문안한다. 호산관은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해당 궁에 조석으로 문안한다.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는 7일과 동일하게 한다. 3청 의관의 문안도 모두 위의 예와 같이 한다.(원손(元孫)이 탄생했을 때에는 당일부터 구계하고, 원손궁(元孫宮)에도 역시 문후한다. 호산관과 3청 의관은 모두 원자가 탄생했을 때의 예와 같이 문안한다)

○元孫誕降時外 無請對之例

○원손이 탄생할 때 이외에는 청대(請對)하는 예가 없다.



洗浴 목욕.

洗浴 第三日爲之(奏時 改貼時例) 前一日 護産官以某時推擇 當取某方水 而洗浴 謹慎之意 及洗浴湯煎次 水出給之意 並書啓于大殿當殿宮(汲水所盛次 陶東海同 入)

세욕(洗浴)은 분만 3일째에 하는데(시각을 아뢰는 것은 산도를 개첩(改貼)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하루 전날에 호산관이 "모 시를 가려 뽑아 모 방향의 물을 가져다가 신중하게 세욕할 것이고, 세욕에 사용할 물을 끓이기 위해 물을 내어 오겠습니다."라고 아울러 써서 대전과 해당 궁전에 서계한다.(물을 길어다 당기 위하여 도기로 만든 동이도 함께 들인다)

○當日吉時前 三提調以洗浴謹慎之意 口啓(元子元孫誕降時 亦以保護詳審之意添 措辭)

○당일 길한 시각 이전에 3제조가 신중하게 세욕하겠다고 구계(□啓)한다.(원 자나 원손이 탄생했을 때에도 역시 보호하고 자세히 살피겠다는 뜻을 더해 문 서를 작성한다)

○當殿宮洗浴次 陳艾湯水 二陶所羅〔紙盖覆 書某殿宮洗浴次〕白正布白苧布 各三尺〔各周封書當殿宮手巾次 某布三尺 只謹封〕陳艾 二編〔帶封 書陳艾二編 只謹封〕阿只氏洗浴次 李根 梅根 桃根 虎頭骨一部 同煎水 和猪膽汁一部 盛鍮東海一坐〔紙盖覆 書阿只氏洗浴次〕白絹 三尺〔封書式 如上布苧例〕並時刻前入之 而大殿當殿宮 以洗浴水棄沷某方事 書啓同入

○해당 전궁의 세욕(洗浴)을 위해 묵힌 쑥으로 끓인 물 2도소라(陶所羅)¹(종이로 만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모 전궁의 세욕을 위한 것."이라고 쓴다), 백정 포(白正布)와 백저포(白苧布) 각 3척(각각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해당 전궁을 닦을 수건의 용도로 사용하는 백정포 3척과 백저포 3척."이라고 쓰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묵힌 쑥 2두릅(띠로 싸서 봉하고 "묵힌 쑥 2

두릅."이라고 쓰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아기씨의 세욕을 위해 오얏나무 뿌리, 매화나무 뿌리, 복숭아나무 뿌리, 호랑이머리 뼈 1부를 섞어 물에 넣어 끓이다가 돼지쓸개 즙 1부를 타서 놋동이에 담은 1좌(종이로 만든 뚜껑을 덮고 "아기씨의 세욕을 위한 것."이라고 쓴다), 흰 명주 3척(봉함하고 쓰는 형식은 위의 백정포와 백저포의 예와 같다)을 모두 시간 이전에 들이고, 대전과 해당 전궁에 세욕한 물을 아무개 방향으로 버리겠다고 서계하여 함께 들인다.

○傳纏次 鏡面朱砂 石雄黃 各一兩重一塊 各封入之〔封書傳纏次 鏡面朱砂一塊 石雄黃 封式同〕

○탯줄을 묶기 위해 경면주사(鏡面朱砂)와 석웅황 각각 1냥쭝 무게의 한 덩이를 각각 봉해서 들인다.(봉하고 "탯줄을 묶기 위한 경면주사 한 덩이."라고 쓴다. 석웅황에 대해 봉하고 쓰는 형식도 같다)

○洗浴後 卽時以當殿宮及阿只氏 洗浴後氣候平安之意 皆爲書啓事〔若値元書啓時 則兼爲措辭入之〕

○세욕한 뒤에 즉시 "해당 전궁과 아기씨가 세욕한 뒤에 몸 상태가 평안합니다."라고 써서 함께 서계한다.(만약 원서계(元書啓)할 때와 겹치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문장을 꾸려서 들인다)

- 〔頭註: 近則中宮殿洗浴水 入盛鍮東海一坐 阿只氏洗浴水 入盛鍮大也一坐 各 盛漆盘 而盘則還出〕
- (두주: 근래에는 중궁전의 목욕물을 놋동이 1좌에 담아 들이고, 아기씨의 세욕수는 놋대야 1좌에 담아 들였는데, 각각 옻칠한 쟁반에 담아서 들이고 쟁반은다시 가지고 나왔다)
- 〔頭註: 洗浴水煎次 鐵烽爐及銀鼎 本院待令〕
- (두주: 세욕수를 끓이기 위한 철제 화로와 은으로 만든 솥은 내의원에서 대령 한다)

- 〔頭註: 手巾次 布苧及白絹 入盛一盤〕
- 〔두주: 수건으로 사용할 백정포와 백저포 및 백견(白絹)은 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다〕
- 〔頭註: 朱砂石雄黃 提調監封 入盛一盤〕
- (두주: 주사와 석웅황은 제조가 조사하고 봉한 뒤에 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 다)

1. 도소라(陶所羅): 도기로 된 소래기이다. 소래기는 운두(둘레, 높이)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으로, 독의 뚜껑이나 그릇으로 쓴다. ↔

洗胎 태를 씻음.

洗胎 第三日爲之〔奏時如上例 ○或因下教 第七日爲之〕前一日 護産官以某時推擇 當取某方水 而洗胎節次 及自內封標出給 則與次知內官擧行之意 書啓于大殿當殿 宮

태를 씻는 것은 분만 3일째에 한다.(시간을 아뢰는 것은 앞의 예와 같다. ○혹하교에 따라 7일째에 하기도 한다) 하루 전날 호산관이 "모 시를 가려 뽑아 모방향의 물을 취했습니다. 태를 씻는 절차 및 대내(大內)에서 봉표(封標)하여물품을 내어주면 담당 내관과 함께 거행하겠습니다."라고 대전과 해당 전궁에서계한다.

○洗胎時 物種〔見日記 而甘糖則使工曹匠人 預為作片待令〕前一日夕入之 而當日 醫女先入擧行

○태를 씻을 때의 각종 물품(일기에 보인다. 엿은 공조 소속 장인으로 하여금 미리 조각을 내어 대령하게 한다)은 하루 전날 저녁에 들이는데, 당일에 의녀 가 먼저 들어와서 거행한다.

○當日時刻前 大殿當殿宮 以洗胎水棄沷某方之意 書啓 又封褁物種 護産官以下領入 舉行事(物種及封褁式 見日記)

○태를 씻는 당일 시각 이전에 대전과 해당 전궁에 세태(洗胎)한 물을 아무개 방향으로 버리겠다고 서계한다. 또 각종 물품을 봉과(封褁)하고 호산관 이하 가 가지고 들어와 거행한다.(각종 물품과 봉과하는 방식은 일기에 보인다)

- 〔頭註: 洗胎物種 近日則當日持入〕
- (두주: 태를 씻을 때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근래에는 당일에 들인다)
- 〔頭註:今日某時洗胎之意 眞諺書啓〕
- [두주: 오늘 모시에 때를 씻겠다고 한문과 한글로 서계한다]



雲母膏 운모고.

雲母膏 一種子(盖紙 書雲母膏) 藍紬 一尺(封書藍綿紬一尺 只謹封) 第三四日間入之 而以阿只氏臍帶解胎後付貼次入之之意 書啓事

운모고 1종지기(종이로 만든 뚜껑에 "운모고"라고 쓴다), 남색 명주 1척(봉하고 "남색 명주 1척."이라고 쓰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을 분만후 3일이나 4일째 사이에 들이는데, "아기씨의 배꼽줄이 태반에서 떨어진 후에 붙이기 위하여 들입니다."라고 서계한다.

- 〔頭註: 入盛一盤〕
- (두주: 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다)

捲草祭 권초제.

捲草祭 第七日爲之〔奏時如上例〕 捲草官及引儀二人 二日齋宿於本院之意 前期微 禀

권초제는 분만 후 7일째에 한다.(시간을 아뢰는 것은 앞의 예와 같다) 권초관 (捲草官)과 인의(引儀) 2명이 이틀 동안 내의원에서 재계 · 직숙하겠다고 기일 에 앞서 넌지시 아뢴다.

○捲草日 陪從各司 預爲分付事(內資寺官員一員捧甘該寺 ○女阿只氏 內贍寺 ○部 將二員 騎馬一匹 鞍具 引路軍二名 奉炬軍六名 扶囑軍二名 及儀仗軍 並捧甘兵曹 負函抄奴 具鮮明服色 捧甘虧院 大中炬六炳 捧甘工曹 樂工等 捧甘掌樂院〕

○권초하는 날 배종(陪從)하는 각 관청에 미리 분부한다.(내자시의 관원 1명이해당 시(寺)에 각각 감결을 전한다. ○여자 아기씨의 경우에는 내섬시(內贍寺)에서 맡는다. ○부장 2명, 기마 1필, 안장,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 부촉군 2명및 의장군은 모두 병조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함을 지도록 선발된노비는 선명한 복색을 갖추는데 사용원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큰 횃불과 중간 횃불 6자루는 공조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고, 악공 등은 장악원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前一日 以某時推擇依例舉行之意 書啓

○하루 전날에 모시를 가려 뽑아 규례대로 거행하겠다고 서계한다.

○捲草祭物種(見日記) 各其司官員領納 提調監捧(葉紙書某物 而古道里封 臣謹封) 當日入之

○권초제의 각종 물품(일기에 보인다)은 각 관청의 관원이 가지고 와서 바치고, 제조가 조사하고 봉하여(엽지(葉紙)에 "아무개 물건."이라고 쓰되, 고등어를 봉한 것에는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 권초제 당일에 들인

다.

○封褁物種(見日記)

- ○봉과(封褁)하는 각종 물품(일기에 보인다)
- ○當日時刻前 捲草官以下〔三提調 依下教入參〕入詣産室 鋪陳後行 祭法及封褁後 陪行節次〔並詳見事例 ○所入物種 並不出〕
 - ○권초제 당일 시각 이전에 권초관 이하(3제조는 하교에 따라 참석한다)가 산 실에 들어와 제물을 진설한 뒤에 거행한다. 제사지내는 법과 봉과(封褁)한 뒤 의 배행하는 절차. (모두 사례에 자세히 보인다. ○들이는 각종 물품은 모두 서 술하지 않는다)
- ○祭罷後 三提調依例撤直 護産官姑爲仍留之意 口啓事(護産官仍直 則只翌日行當 宮殿問安 ○二七三七百日同 而待令醫女同)
 - ○권초제가 끝나면 "3제조는 규례에 따라 직숙을 거두고, 호산관은 당분간 그대로 남아 직숙하겠습니다."라고 구계(□啓)한다.(호산관이 그대로 직숙하면 단지 권초제를 끝낸 다음날에만 해당 전궁에 문안한다.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도 같고 대령의녀(待令醫女)도 마찬가지이다)
- ○三提調來待 啓辭〔戊午入侍時 都提調元子宮供上 本院各種依例入之事 筵稟 ○七 日後 卽時安神丸一劑製入 而封入時 依例製入之意 微禀〕
 - ○3제조가 와서 대령하다가 계사(啓辭)한다.(무오년(철종9: 1858) 입시했을 때에 도제조가 "원자궁에 공상하는 내의원의 각종 물품을 규례대로 들였습니다."라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7일 뒤에 즉시 안신환 1제를 지어 들이고, 봉입(封入)할 때에 규례대로 들였다고 넌지시 아뢰었다)
 - 〔頭計: 捲草陪進門 禀後當日預開待令事 分付結束色〕
 - 〔두주: 권초(捲草)를 배진(陪進)하는 문은 여쭌 뒤에 당일에 미리 열어서 대령하라고 결속색(結束色)에게 분부한다)

- 〔頭註: 捲草陪進 以何門爲之 掌務官詣差備 前期微禀〕
- 〔<mark>두주</mark>: 권초를 배진하는 문을 어떤 문으로 할지를 장무관(掌務官)이 차비문에 나아가 기일 이전에 넌지시 아뢴다〕
- 〔頭註: 捲草官引儀 每齋宿於闕中他司 而亦別省記〕
- 〔두주: 권초관과 인의(引儀)가 매번 대궐 안의 다른 관사에서 재계 · 직숙하면역시 별도로 성기(省記)한다)
- 〔頭註: 某時捲草之意 書啓〕
- (두주: 모시에 권초제를 거행하겠다고 서계한다)
- 〔頭註: 捲草祭時 三提調入參事及殿庭用樂 以司謁微禀〕
- 〔두주: 권초제를 거행할 때 3제조가 입참하는 것과 궁궐 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알(司謁)을 통해 넌지시 아뢴다)
- 〔頭註: 牛黃膏 第三日製入 安神丸 第七日製入之例 而戊辰五月産室廳進排物種裁減草記 特依雲峴宮所教 待下教入之事 定式〕
- (두주: 우황고는 분만 후 3일째에 지어서 들이고, 안신환은 7일째에 만들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무진년(고종5: 1868) 5월 산실청에 배설하는 각종 물품을 줄이겠다고 초기(草記)했을 때에 특별히 운현궁의 지시에 따라 하교를 기다려 들이는 것을 정식으로 삼게 되었다)

別單 별단.

別單 待下教入之事

별단은 하교를 기다려 들인다.

三提調一張 別入直幾張(隨時) 捲草官一張 史官一張 待令醫官 別掌務官 別入直醫官 元掌務官 合一張 待令書員醫女 水工(即研末使令)軍士諸員 合一張 本院三廳元入直(已上 元入直六日) 內醫別入直(已上輪回別入直) 合一張 各色書員一張內資官員及各該司員役 合一張(已上 自本院修入) 引儀 擇日官 奏時官 寫字官樂工等 -已上 五張- 自各該司書來 本院捧入

3제조는 1장에, 별입직(別入直)은 몇 장에(때에 따라 다르다), 권초관(捲草官)은 1장에, 사관(史官)은 1장에, 대령의관(待令醫官), 별장무관(別掌務官), 별 입직 의관(別入直醫官), 원장무관(元掌務官)은 합하여 1장에, 대령서원(待令 書員), 의녀, 수공(水工)(곧 연말사령(研末使令)이다), 군사 등의 인원은 합하여 1장에, 본원과 3청의 원입직(元入直)(이상은 원입직을 6일간 한다), 내의 별입직(內醫別入直)(이상은 돌아가면서 별입직한다)은 합하여 1장에, 각 색의 서원(書員)은 1장에, 내자시 관원 및 해당 각 관사의 원역(員役)은 합하여 1장(이상은 내의원에서 정리하여 들인다)에 작성한다. 인의(引儀), 택일관(擇日官), 주시관(奏時官), 사자관(寫字官), 악공 등 -이상은 5장이다-은 해당 각사에서 써서 보내오면 본원에서 봉입(捧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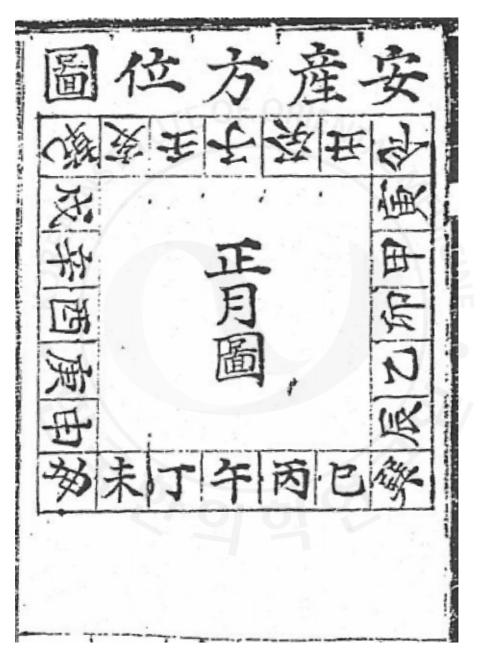
世子嬪宮産室時 侍講院書啓 自該院入之〔近則三提調一張 別入直幾張 捲草官一張 史官二員 一張 待令醫官四員 別掌務官一員 別入直醫官三員 一張 待令書員四人 醫女二名 研末使令二名 軍士四名 司僕諸員五名 一張 御醫 內醫 上下掌務官 一張 藥色二人 掌務色二人 入番書員 使喚書員 庫直使令 軍士 童便軍士 近仗軍士 官

使喚 一張 畫員 寫字官 一張 捲草陪進時 內資寺官員一員 清道部將二員 負函抄奴 一名 扶囑軍二名 引路軍二名 奉炬軍六名 一張 -已上 自本院修入- 引儀 擇日官 奏 時官 樂工 自各該司書來 本院捧入〕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에는 시강원(侍講院)에서 서계하는데, 해당 원에서 들인다.(근래에는 3제조는 1장에, 별입직은 몇 장에, 권초관은 1장에, 사관 2명은 1장에, 대령의관 4명, 별장무관 1명, 별입직 의관 3명은 합하여 1장에, 대령서원 4명, 의녀 2명, 연말사령 2명, 군사 4명, 사복시 제원 5명은 합하여 1장에, 어의, 내의, 상하의 장무관은 합하여 1장에, 약색(藥色) 2명, 장무색(掌務色) 2명, 입번서원(入番書員), 사환서원(使喚書員), 고직사령(庫直使令), 군사, 동변군사(童便軍士), 근장군사(近仗軍士), 관사환(官使喚)은 합하여 1장에, 화원(畫員), 사자관(寫字官)은 합하여 1장에 작성한다. 권초를 배진(陪進)할 때에는 내자시 관원 1명, 청도부장(淸道部將) 2명, 함을 짊어지는 노비 1명, 부촉군(扶屬軍) 2명, 인로군(引路軍) 2명, 봉거군(奉炬軍) 6명은 합하여 1장이다. -이상은 본원에서 정리하여 들인다- 인의(引儀), 택일관(擇日官), 주시관(奏時官), 악공은 각 해당 관사에서 써서 보내면 본원에서 봉입(捧入)한다)

- 〔 <mark>頭註</mark>: 捲草陪進日 早朝待令 負函抄奴一名 扶囑軍二名 引路軍二名 奉炬軍 六名等處 足巾次 白木二疋 自差備先爲賜給 而一疋負函抄奴 一疋則扶囑軍等 十名分處〕
- 〔두주: 권초를 배진(陪進)하는 날에 이른 아침부터 대령하는 함을 짊어지는 노비 1명, 부촉군 2명,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 등에게 버선으로 사용할 무명 2필을 차비문에서 미리 지급하는데, 1필은 함을 짊어지는 노비에게, 1필은 부촉군 등 10명에게 나누어 준다)

産圖及催生符借地法 산도, 최생부, 차지법.



<安産方位圖 안산방위도>

產圖及催生符借地法 並以朱書 產母房內北壁上先貼產圖 次貼催生符 次貼借地法 讀借地法三遍而止〔紙用草注紙 方一尺一寸 以朱砂印出 ○板在本院〕

산도(産圖), 최생부(催生符), 차지법(借地法)은 모두 붉은 글씨로 쓴다. 산모의 방 안 북쪽 벽 위에 먼저 산도를 붙이고, 다음에 최생부를 붙이며, 다음에 차지법을 붙인다. 차지법을 세 번 읽고 마친다.(종이는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는데 사방 1척 1촌으로, 주사로 인출(印出)한다. ○인판은 본원에 있다)

〔凡逐月安產藏胎衣 並向月德月空方位 所有十三神殺 並須避忌 若交得次月 卽換次月產圖 有人從入節日作產圖者 非也 假如正月十四日立春 若姙婦十三日臥乳 豈可作去年十二月用也 必依每月朔日用之乃是 若依節氣更換 則天德月德所在差矣○凡産訖 棄沷汚穢不淨之水 並隨藏衣之方所向 不拘遠近棄之 切忌閉肚方○如正月 月德在丙 可安産室 月空在壬 可藏胎衣 後倣此〕

(무릇 매달 분만실의 방향은 월덕(月德)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태반을 보관하는 방향은 월공(月空)의 방위로 향하게 하여 13개의 신살(神殺)을 모두 피한다. 만약 산달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즉시 다음 달의 산도로 바꾸어야 한다. 혹자는 절기에 드는 날을 기준으로 산도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가령 정월 14일이 입춘인데 임산부가 13일에 분만한 뒤에 누워서젖을 먹인다면 어찌 작년 12월의 것을 쓸 수 있겠는가. 반드시 매월 초하루의 것을 써야만 옳다. 만약 절기에 따라서 바꾸게 된다면 천덕(天德)과 월덕의 소재와 어긋나게 된다. ○무릇 분만이 끝난 뒤에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버릴때는 원근을 따지지 않고 태반을 묻는 방향을 따르되, 폐두방(閉肚方)은 절대로 피한다. ○가령 정월이라면 월덕이 병(丙) 방향에 있으니 분만실을 병 방향으로 정할 수 있고, 월공은 임(壬) 방향에 있으니 태반을 임 방향에 보관할 수 있다. 나머지 달도 이와 같다)



安産藏胎衣吉方 분만실의 길한 방향과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安產藏胎衣吉方(凡月德安產室 月空藏衣爲準)

분만실의 길한 방향과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무릇 월덕(月德)의 방향은 분만실을, 월공(月空)의 방향은 태반을 묻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天德	月德	月空	生氣
正月	丁	丙	£	子
二月	坤	甲	庚	# 0
三月	£	壬	丙	寅
四月	辛	庚	甲	卯
五月	乾	丙	壬	辰
六月	甲	甲	庚	E
七月	癸	壬	丙	午
八月	艮	庚	甲	未
九月	丙	丙	£	申
十月	Z	甲	庚	酉
十一月	巽	壬	丙	戌
十二月	庚	庚	甲	亥

	천덕(天德)	월덕(月德)	월공(月空)	생기(生氣)
정월(正月)	정(丁)	병(丙)	임(壬)	자(子)
2월(二月)	곤(坤)	갑(甲)	경(庚)	축(丑)
3월(三月)	임(壬)	임(壬)	병(丙)	인(寅)
4월(四月)	신(辛)	경(庚)	갑(甲)	묘(卯)
5월(五月)	건(乾)	병(丙)	임(壬)	진(辰)
6월(六月)	갑(甲)	갑(甲)	경(庚)	사(巳)
7월(七月)	계(癸)	임(壬)	병(丙)	오(午)
8월(八月)	간(艮)	경(庚)	갑(甲)	미(未)
9월(九月)	병(丙)	병(丙)	임(壬)	신(申)
10월(十月)	을(乙)	갑(甲)	경(庚)	유(酉)
11월(十一月)	손(巽)	임(壬)	병(丙)	술(戌)
12월(十二月)	경(庚)	경(庚)	갑(甲)	해(亥)

催生符 최생부.



<催生符 최생부>

〔右符 以朱砂書之 貼於方內北壁上 遇坐草之時 箚於針上 就燈燒之 不得飛揚 溫水 調服 ○紙用草注紙 長九寸 廣三寸 以朱砂印出 ○板在本院 ○産圖催生符 並印出〕

(위의 부적은 주사로 써서 방 안의 북쪽 벽 위에 붙인다. 분만이 시작되면 부적을 떼어 바늘로 찌른 뒤에 등잔불에 태우되, 그 재를 날려버리지 말고 따뜻한물에 타서 임산부가 마신다. ○종이는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9촌이고 폭은 3촌으로, 주사로 인출(印出)한다. ○인판은 본원에 있다. ○산도와 최생부와 함께 인출한다)

- 〔頭註: 箚於鍼上 就燈燒之 溫水調服之法 醫方所在 而不用此法〕
- (두주: 벽에 붙였던 부적을 떼어 바늘로 찌른 뒤에 등잔불에 태워 그 재를 따뜻한 물에 타서 임산부가 마시는 방법은 의학 처방에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借地法 차지법>

借地法 東借十步 西借十步 南借十步 北借十步 上借十步 下借十步 壁房之中四十餘步 安産借地 恐有穢汚 或有東海神王 或有西海神王 或有南海神王 或有北海神王 或有日遊將軍白虎夫人 遠去十丈 軒轅招搖 擧高十丈 天符地軸 入地十丈 令此地空閑 中宮殿下某氏安居 無所妨碍 無所畏忌 諸神擁護 百邪逐去 急急如律令勅

차지법. 동쪽으로 10걸음, 서쪽으로 10걸음을, 남쪽으로 10걸음을, 북쪽으로 10걸음을, 위로 10걸음을, 아래로 10걸음을, 방의 가운데 40여 걸음의 땅을 안산을 위해 빌립니다. 혹여 오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혹 동해신왕이나 서해신왕이나 남해신왕이나 불해신왕이나 멜유장군이나 백호부인이 계신다면 멀리 10길 밖으로 떠나시고, 헌원초요는 10길 높이로 오르시며, 천부지축은 10길 깊이로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땅을 비워 중궁전하 모씨가 편안히 거처하여 방해가 없고 두려움이 없도록 모든 신령께서 보호하여 온갖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시기를 마치 율령이 내려진 듯 급하게 하소서.

以朱砂書之 字樣如綱目小字大〔紙用草注紙 方一尺一寸〕

주사로 쓰는데, 글자의 모양은 《자치통감강목》의 작은 글자 크기로 한다.(용 지는 초주지를 사용하는데 사방 1척 1촌이다)

已上產圖催生符借地法 北壁子方下 次次付之(產室房內 泛鐵先定二十四方位 而每方位字 分排付之于班子下)

이상의 산도와 최생부와 차지법은 분만실 북쪽 벽의 자(子) 방향 아래 차례대로 붙인다.(분만실 안에 범철관(泛鐵官)이 먼저 24방위를 정하고, 각 방위에 해당하는 글자를 **반자(班子)**¹ 아래에 나누어 붙인다)

¹. 반자(班子):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천 장이다. 김호. ↔

二十四方位字 이십사방위에 해당하는 글자.

③

二十四方位字

〔草注紙 方一寸七分 以朱砂斜方書之 字樣如產圖〕

24방위에 해당하는 글자는 와 같은 모양으로 쓴다.(초주지를 사용하는데 사방 1촌 7푼이고, 주사로 마름모꼴로 쓰는데 글자의 모양은 산도와 같게 한다)

安産室吉方 분만실의 길한 방향.

安産室吉方(草注紙 長八寸廣二寸五分 以朱砂書之 字樣如產圖字)

분만실의 길한 방향.(초주지를 사용하는데 길이 8촌, 너비 2촌 5푼으로, 주사로 쓰는데 글자의 모양은 산도의 글자와 같게 한다)



藏胎衣吉方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藏胎衣吉方(上同)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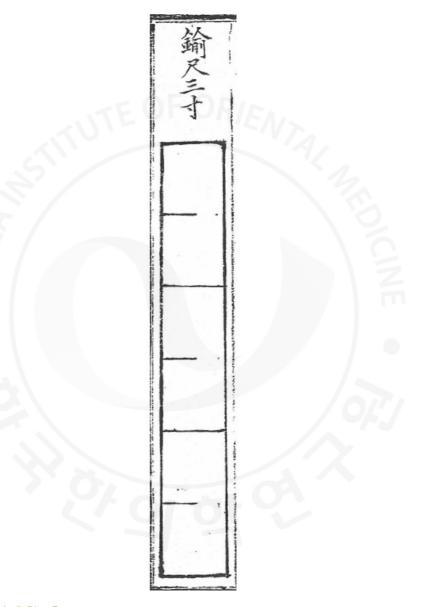
命白米 명백미.

命白米(十斗式)葉紙十張 命絹(十疋) 命紬(十疋) 命白絲(十斤) 命正銀(一百兩) 葉紙各一張(草注紙 長一尺廣一寸五分 以墨書之)○已上 並令寫字官書之

명백미(10말씩)¹, 엽지 10장, 명견(10필), 명주(10필), 명백사(10근), 명정은 (100냥), 엽지 각 1장(초주지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1척, 너비는 1촌 5푼으로, 먹으로 쓴다) ○이상은 모두 사자관(寫字官)에게 쓰게 한다.

¹. 물명에 모두 "목숨 명(命)"을 붙여 장수를 기원한 것이다. ←

鍮尺三寸 유척 **3촌.**



<鍮尺三寸 유척 3촌>



房中日遊神所在 방 안에 일유신(日遊神)이 있는 곳.

房中日遊神所在(癸巳甲午乙未丙申丁酉日在房內北○癸卯日在房內西○甲辰乙巳 丙午丁未日在房內東○六戊六巳日在房中○庚子辛丑壬寅日在房內南○凡遊神所 在 忌安床換帳致重物於床中 必主傷産墮胎〕

방 안에 일유신(日遊神)이 있는 곳(계사、갑오、을미、병신、정유일에는 방 안의 북쪽에 있다. ○계묘일에는 방 안의 서쪽에 있다. ○갑신、을사、병오、정 미일에는 방 안의 동쪽에 있다. ○여섯 번의 무일과 여섯 번의 사일에는 방 가운데 있다. ○경자、신축、임인일에는 방 안의 남쪽에 있다. ○무릇 떠도는 신 령이 있는 곳에는 침상을 두거나 휘장을 바꾸는 것을 꺼리고 침상 가운데에 무거운 물건을 두는 것을 꺼리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산모가 상하여 태아가 떨어진다)

○自觀象監眞諺書來 而作貼褁袱等節 並同本院貼冊〔產室排設日及每月晦日 依例 書入〕

○관상감(觀象監)에서 한문과 한글로 써서 보내는데, 첩책(貼冊)을 만들고 보자기에 싸는 등의 절차는 모두 내의원의 첩책과 같은 양식으로 한다.(산실을 배설(排設)하는 날과 매월 그믐에 관상감에서 규례대로 써서 들인다)

○排設時所用 ○배설시 소용 물목

二十四方位字 產圖 催生符 借地法(又讀件一張)安産室吉方 藏胎衣吉方(已上同 器紅紬四幅袱) 加莫金一箇 鹿皮馬轡一部(褁厚白紙半張) 黃草五封(褁白紙) 空石六立(七莖者) 草席六立 羊毛氊二浮(褁厚白紙) 油芚二浮(四張付。或只用六張) 白馬皮一領(褁厚白紙。有耳者) 鼺鼠皮二領(褁厚白紙。或入樻) 生苧一斤(褁白紙) 剪邊空石 一立(褁厚白紙。二十一莖者 長三尺九寸 廣一尺七寸) 長道里一箇 所串一箇 執介一箇 大登床一坐(塗朱) 小登床一坐(塗朱) 大書板一箇 糊桶一箇 大圓環二箇(一介殿前柱中懸鈴乼所用 一介産室廳竹柱所錠) 銅絲(隨所入) 紅綿絲三甲大所三把(殿前懸鈴乼所入) 雲梯一部(塗朱) 架子二部 竹柱一箇 大鈴一箇(具紅条所

이십사방위에 해당하는 글자, 산도, 최생부, 차지법(독본용으로 1장), 분만실의 길한 방향,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이상은 함께 붉은 명주로 만든 4폭짜리 보자기에 싼다), 가막쇠 1개 사슴가죽으로 만든 말고삐 1부(두꺼운 백지반 장으로 싼다), 황초 5봉(백지로 싼다), 빈 가마니 6닢(7경으로 짠 것), 명석6닢 양탄자 2부(두꺼운 백지로 싼다), 기름먹인 방석 2부(4장을 붙인다. ㅇ혹은 6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백마 가죽 1령(두꺼운 백지로 싼다. ○궤에 넣기도 한다), 생모시 1근(백지로 싼다), 가장자리를 잘라낸 빈 가마니 1닢(두꺼운 백지로 싼다. ○21경으로 짠 것으로, 길이는 3척 9촌, 폭은 1척7촌이다), 장도리 1개, 송곳 1개, 집개 1개, 대등상 1좌(붉은 칠을 한다), 소등상 1좌(붉은 칠을 한다), 큰 서판 1개, 풀통 1개, 큰 둥근 고리 2개(1개는 전궁 앞 기둥에 방울을 매다는줄을 거는 용도이고, 1개는 산실청 대나무 기둥에 박는 용도이다), 구리 철사(장소에 따라서 들인다), 붉은 목화실로세 겹으로 꼰 큰 밧줄 3발(전궁 앞에방울을 매다는줄에 들어간다), 구름사다리 1부(붉은 색을 칠한다), 가자 2부, 대나무 기둥 1개, 큰 방울 1개(붉은 줄바(^22)를 갖춘다.

○已上二種 移設所所用〕 笏記

○이상 두 가지 물품은 이설소에 소용되는 것이다), 홀기.

- 〔 頭註: 借地法讀件 長道里 所串 執介 書板 糊桶 架子 並還出 而大小登床 雲梯 則後用次 別置於差備內〕
- (두주: 차지법의 독본, 장도리, 송곳, 집개, 서판, 풀통, 가자는 모두 다시 내보내지만, 대등상, 소등상, 사다리는 이후에 쓰기 위해 차비문 안에 따로 둔다)



○懸草門所用 ○현초문 행사에 소용되는 물목

三寸釘三箇

紅綿絲三甲大所一把〔橫繋釘左右次〕

紅鄉絲三甲所一把式三条(各繫釘三處次)

大登床

小登床

雲梯(已上三種 前排仍用)

3촌짜리 못 3개,

붉은 목화실로 세 겹으로 꼰 큰 밧줄 1발(가로로 못의 좌우로 매기 위한 것이다),

국내산 붉은 명주실로 세 겹으로 꼰 밧줄 1발씩 3조(각각 3군데 못에 매달기위한 것이다),

대등상,

소등상,

구름사다리.(이상의 세 종류 물품은 이전에 배설한 것을 그대로 쓴다)

송곳,

○改付貼時所用 ○다시 붙일 때 소용되는 물품

産圖
催生符
借地法
安産室吉方
藏胎衣吉方(已上 同褁紅紬四幅袱)
借地法 安産室吉方 藏胎衣吉方(已上 同褁紅紬四幅袱) 加莫金一箇(預備)
長道里
所串
執介
大登床
小登床
書板
糊桶(已上七種 前排仍用)
歛髮竹
笏記
산도,
최생부,
차지법,
분만실의 길한 방향,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이상은 함께 붉은 비단으로 만든 4폭짜리 보자기
로 싼다),
가막쇠 1개(예비용이다),
장도리,
O → −1,

집개,

대등상,

소등상,

서판,

풀통(이상 7가지는 이전에 배설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살쩍밀이 대나무,

홀기.

- 〔頭註: 長道里 所串 執介 書板 糊桶 歛髮竹 並還出〕
- (두주: 장도리, 송곳, 집개, 서판, 풀통, 살쩍밀이 대나무는 모두 다시 돌려보낸 다)

○洗胎時所用 ○태반을 씻을 때 소용되는 물품

香醞酒一瓶

古銅錢

油紙〔依胎缸 缸口稍大〕

藍綿紬(上同)

外白缸

白綿花(褁白紙)

草注紙(圓切依缸口稍大)

甘糖(上同)

紅木牌(具纓)

四耳陶豆毛

常毛氈(二立)

紅鄉絲[四耳陶豆毛所入]

大陶豆毛

陶東海一坐

陶所羅一坐

瓢子一箇

白馬尾篩一部

火爐(實炭起火)

火飭

手巾布一尺

擔桶一部(具杖)

封標紙二条

着署紙二条

結封紙二条

硯(濕紙具)

筆墨

糊桶

架子一部

筭竹一百箇

地依一浮

FORIENTAL 紅纓子三件(內白缸二件 外白缸一件)

木盤一

笏記

향온주 1병,

오래된 동전,

기름종이(태항아리에 따라 태항아리 입구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

남색 명주(위와 같다),

바깥 백자 항아리,

흰 솜(흰 종이로 싼다),

초주지(등글게 자르는, 항아리 입구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

엿(위와 같다),

홍목패(끈을 갖춘다),

4귀를 갖춘 도기 두 g^1 ,

상모전(2닢),

국내산 붉은 실(4귀를 갖춘 도기 두멍을 묶을 때에 사용된다),

큰 도기 두멍,

도기 동이 1좌,

도기 소래기 1좌,

표주박 1개,

백마의 꼬리로 만든 체 1부,

화로(실탄으로 불을 지핀다),

부젓가락,

수건포 1척,

질통 1부(지팡이를 갖춘다),

봉표지 2조,

착서지 2조.

결봉지 2조,

벼루(적신 종이도 갖춘다),

붓과 먹,

풀통,

가자 1부,

산가지 100개.

지의 1부.

붉은 끈 3건(안쪽 백자항아리에 2건, 바깥쪽 백자 항아리에 1건)

나무 쟁반 하나,

홀기.

- 〔頭註: 古網錢油紙 藍綿紬 草注紙 紅木牌 紅鄉絲 手巾布 封標紙 着署紙 結 封紙 筹竹 紅纓子 同褁紅木三幅袱 而入盛一盤〕
- (두주: 오래된 동전, 기름종이, 남색 명주, 초주지, 홍목패, 국내산 붉은 실, 수 건포, 봉표지, 착서지, 결봉지, 산가지, 붉은 끈은 붉은 목면으로 만든 3폭짜리 보자기에 함께 싸서 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다)
- 〔頭討: 近則大陶豆毛不入用〕
- (두주: 근래에는 큰 도기 두멍은 쓰지 않는다)
- 〔頭註: 空瓶 火爐 火箸 擔桶 硯 筆墨 糊桶 架子 筭竹 地衣 並還出〕
- (두주: 빈 병, 화로, 부젓가락, 질통, 벼루, 붓, 먹, 풀통, 가자, 산가지, 지의는 모두 다시 돌려보낸다)

¹. 두멍: 물을 담아 놓고 쓰는 큰 가마니 ↔



○捲草祭時所用及封褁所用 ○권초제 때 소용되는 물목 및 봉과할 때 소용되는 물목

命白米

命絹

命紬

命白絲

命正銀

地衣(九張付)

塗朱馬木(二坐)

塗朱大板子(五立)

畵邊油紙(六張)

香案

鍮香爐(具火)

鍮香盒具沈香

鍮燭臺(一雙)

四兩黃燭(一雙)

高足床

拜席(二寸)

鍮大也

手巾布(一尺 捲草官)

全漆函(紅鄉絲具)

紅紬六幅袱(紅綿絲具)

白苧帒(紅纓子具)

紅紬(長三尺)二幅袱(紅纓子具)

紅木牌(具纓)

紅紬五幅袱〔覆函次紅纓子具〕 支機一部 紫的頭巾 紫的冠帶 色条帶 E OF ORIENTAL 靴子 着署紙四条 負函大紅(綿絲)条所(支機乼) 結封紙(四条) 硯 筆 墨 糊桶 架子五部 鍮火爐(實炭起火) 火箸 地衣一浮 笏記 명백미, 명견, 명주, 명백사, 명정은, 지의(9장을 붙인다), 붉은 색 칠한 말목(2좌), 붉은 색 칠한 큰 판자(5닢),

화변유지(6장),

향안, 놋향로(불도 갖춘다), 침향을 갖춘 놋향합, <u> 놋촛대(1쌍)</u>, 4냥짜리 황촉(1쌍), 고족상, 배석(2닢), 놋대야, 수건포(1尺, 권초관이 쓴다), 전칠함(국내산 붉은색 실을 갖춘다), 6폭 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붉은색 목화실을 갖춘다), 흰 모시 포대(붉은색 끈을 갖춘다), 붉은색 명주(길이 3척) 2폭짜리 보자기(붉은색 끈을 갖춘다), 홍목패(끈을 갖춘다), 5폭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함을 덮기 위한 것으로, 붉은색 끈을 갖춘다) 지게 1부. 자주색 두건, 자주색 갓과 허리띠, 색깔이 있는 조대, 가죽신, 착서지 4조. 함을 질 때 쓰는 큰 붉은색(면사) 줄바(지겟줄), 결봉지(4조), 벼루. 붓, 먹, 풀통, 가자 5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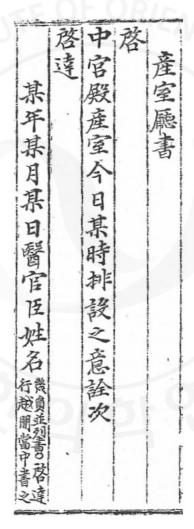
놋화로(실탄으로 불을 지핀다), 부젓가락, 지의 1부, 홀기.

- 〔頭註:覆函次或用紅木五幅袱〕
- (두주: 함을 덮을 용도로 혹 5폭의 붉은 무명 보자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 〔 <mark>頭註:</mark> 命白米十包 入盛五架子 而手巾布 紅紬六幅袱 白苧帒 紅紬二幅袱 紅木牌 紅紬五幅袱 負圅大條所 着署紙 結封紙 同褁紅木五幅袱〕
- 〔두주: 명백미 10포대는 가자 5부에 담고, 수건포(手巾布)는 6폭짜리 붉은색명주 보자기에, 흰모시 포대는 2폭짜리 붉은색명주 보자기에, 홍목패(紅木牌)는 5폭짜리 붉은색명주 보자기에 싸고, 함을 질 큰 줄바, 착서지(着署紙), 결봉지(結封紙)는 5폴짜리 붉은 무명 보자기에 함께 싼다)
- 〔頭註: 高足床 鍮大也 硯 筆 墨 架子 鍮火爐 火筯 地衣 並還出〕
- (두주: 고족상, 놋대야, 벼루, 붓, 먹, 가자, 놋화로, 부젓가락, 지의는 모두 다시 돌려보낸다)

○書啓式 ○서계(書啓)의 양식

〔厚白紙三切○諺書書啓不下知道○凡書啓待令別監入之〕

〔두꺼운 백지 3절한다. ○한글로 쓴 서계에 대해서는 알았다는 의미의 지도(知道)를 내리시지 않는다. ○모든 서계는 대령별감(待令別監)이 들인다〕



<書啓式 서계(書啓)의 양식>

産室廳書啓

中宮殿産室 今日某時 排設之意 詮次啓達 某年某月某日 醫官臣姓名〔幾員並列書 ○啓達 行越間 當中書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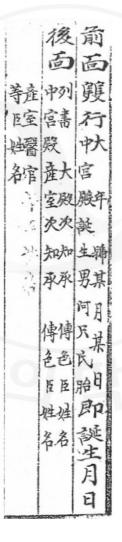
산실청의 서계

중궁전의 분만실을 오늘 모시에 배설하겠다고 전차하여 계달한다. 모년 모월 모일 의관인 신 아무개의 성명(여러 명을 모두 나열하여 적는다. o"계달(啓達)"은 행을 바꾸어 가운데에 적는다)

○胎缸紅木牌書式 ○태항아리에 매다는 홍목패(紅木牌)의 서식

〔捲草函牌同 而阿只氏下去胎字 書捲草 無後面〕

〔권초함(捲草函)에 매다는 패도 동일하나, 아기씨 아래의 "태(胎)"자를 없애고 "권초(捲草)"라고 적으며 뒷면에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胎缸紅木牌書式 태항아리에 매다는 홍목패(紅木牌)의 서식>

前面雙行(大年號某月某日中宮殿誕生男阿只氏胎) 卽誕生月日

앞면은 두 줄이니(청나라 연호와 모월 모일, 중궁전께서 탄생하신 남자 아기 씨의 태) 곧 탄생한 날짜이다.

後面〔列書大殿次知承傳色臣姓名 中宮殿産室次知承傳色臣姓名 産室醫官等臣姓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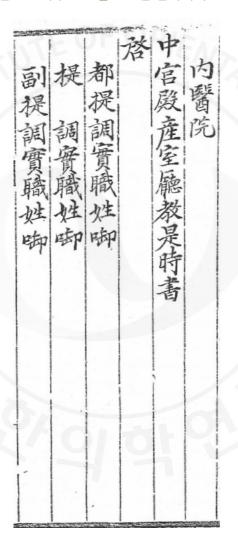
뒷면(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의 성명, 중궁전의 담당 승전색의 성명, 산실 의관 등의 성명을 줄지어 적는다)

- 〔頭註: 見下洗胎笏記頭註〕
- 〔두주: 아래의 태를 씻을 때의 홀기(笏記)의 두주(頭註)에 보인다〕

○別單書啓式 ○별단 서계의 서식

〔楮注紙半張 四間十行 單子〕

(저주지 반 장을 4칸으로 나누고 10줄로 쓰는 단자이다)



<別單書啓式 별단 서계의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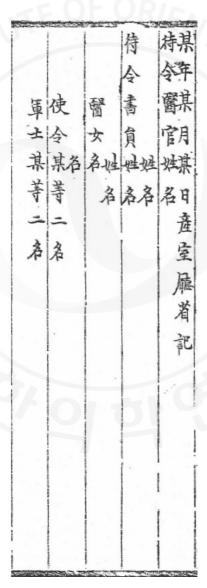
內醫院中宮殿産室廳教是時書啓 都提調實職姓啣 提調實職姓啣 副提調實職姓啣

내의원 중궁전 산실청을 설치할 때의 서계 도제조의 실제 직함, 성, 이름 제조의 실제 직함, 성, 이름 부제조의 실제 직함, 성, 이름

○輪直時省記 ○윤직할 때의 성기(省記)

〔并直時醫官別掌務官書員軍士全數省記而軍士下諸員五名亦爲省記〕

(병직할 때는 의관, 별장무관, 서원, 군사에 대해 전원의 수를 성기하고, 군사를 성기한 아래에 제원 5명도 또한 성기한다)



<輪直時省記 윤직할 때의 성기(省記)>

某年某月某日 産室廳省記

待令醫官姓名

姓名

待令書員姓名

姓名

醫女名

名

使令某等二名

軍士某等二名

모년 모월 모일 산실청 성기

대령의관의 성명

성명

대령서원의 성명

성명

의녀의 이름

이름

사령 아무개 등 2명

군사 아무개 등 2명

○馬轡製法 ○말고삐 제조법

黃鹿皮一令 環而裁之(以黃鄉絲縫造 長則限六尺 而廣製後限二寸)

황색 사슴 가죽 1령을 둥글게 자른다.(국내산 황색실로 꿰매어 만드는데, 길이는 6척으로 한정하고, 너비는 만들어진 뒤에 2촌으로 한정한다)



○海馬石燕子 結紐法 ○해마와 석연자를 묶는 법

海馬一雙〔紅眞絲三甲纓子 而長一尺二寸式 二条〕

해마 1쌍(붉은색 진사(眞絲)를 세 겹으로 꼬아 만든 끈으로, 길이는 1척 2촌씩 2줄)

石燕子一雙(紅眞絲三甲纓子 而長一尺式 二条)

석연자 1쌍(붉은색 진사(眞絲)를 세 겹으로 꼬아 만든 끈으로, 길이는 1척씩 2 줄)

○無盖圅 ○뚜껑없는 함

○無盖圅(紅漆 ○長一尺八寸 廣一尺 高四寸)

○뚜껑없는 함(붉은 칠을 한다. ○길이 1척 8촌, 너비 1척, 높이 4촌)



○香案 ○향안

○香案〔長一尺一寸 廣五寸 高一尺〕

○향안(香案)(길이 1척 1촌, 너비 5촌, 높이 1척)



○大登床,小登床 ○대등상,소등상

○大登床(高三尺)小登床(高一尺五寸)

○대등상(大登床)(높이 3척), 소등상(小登床)(높이 1척 5촌)



○大板子 ○큰 판자

○大板子五立(卽祭床 ○每立 長五尺 廣五寸 厚七分)

○큰 판자 5닢(즉 제상(祭床)이다. ○매 닢마다 길이 5척, 너비 5촌, 두께 7푼)



○馬木 ○말목

○馬木二坐(卽撑舖大板子五立次 ○每坐 長二尺五寸 高二尺二寸)

○말목(馬木) 2좌(즉 큰 판자 5닢을 지탱하여 펴기 위한 것 ○매 좌마다 길이 2 척 5촌, 높이 2척 2촌)

○紅木牌 ○홍목패

○紅木牌(外白缸所用 ○長三寸 廣一寸三分 ○朱砂漆 ○捲草牌同)

○홍목패(紅木牌)(바깥쪽 백자 태항아리에 사용된다. ○길이 3촌, 너비 1촌 3푼 ○주사로 칠한다. ○권초패(捲草牌)도 동일하다)



○排設所用物種 ○배설(排設)할 때 소용되는 물종(物種)

啓目紙(楮注紙半張 四間單子)

계목지(啓目紙)(저주지(楮注紙) 반 장을 4칸으로 한 단자)



○醫官問安單子紙 ○의관이 문안할 때의 단자 종이

○醫官問安單子紙(厚白紙三切 第四間末端 醫官臣姓名 列書)

○의관이 문안할 때의 단자 종이(두꺼운 백지를 3절한다. 4번째 칸 말단에 의관인 신 아무개의 성명을 나열하여 적는다)

○甘糖作片法 ○엿을 편으로 만드는 법

甘糖一斤(作圓片 如外白缸盖 而比缸口 四面剩二分許 ○工曺銀匠)

엿 1근(둥근 편으로 만들 때는 바깥쪽 백자 태항아리 뚜껑과 같게 만들되, 태항아리 입구에 비하여 4면에 2푼 쯤 남게 한다. ○공조(工曺)의 은장(銀匠)이만든다)



○出關式 ○관문을 내는 서식

爲相考事 中宮殿産室廳教是時所用 鼺鼠三箇 必以新捉精乾 頭足腹尾完全者 今月 某日內 罔夜封進 以爲及時入用之地云云〔江監 ○本院取用 而若破傷 則或十月令封 進鼺鼠 先爲上送事 急急發關〕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날다람쥐 3개는 반드시 새로 갑아 잘 다듬고 말린, 머리와 발 및 배와 꼬리가 완전한 것으로 이달 모 일 이내 에 밤을 잊고 받들어 올려 때맞추어 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등.〔<mark>강감</mark> (江監)¹에 보낸다. ○본원에서 가져다 쓰되, 만약 부서지거나 상했다면 혹 10월 에 봉진했던 날다람쥐 가죽을 우선 올려 보내라고 다급히 관문을 보낸다〕

爲相考事 中宮殿産室廳教是時所用 虎頭一部 必以新捕精軋者 分娩教是後 卽爲封 進 官當云云〔畿營○當朔前出關 又臨時分付〕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호랑이 머리뼈 1부는 반드시 새로 잡아서 잘 다듬고 말린 것으로 준비하고, 분만하신 후에 즉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운운.(경기감영에 보낸다. ○산달 이전에 관문을 보내고, 또한 분만이 임박했을 때 또 분부한다)

爲相考事中宮殿産室廳教是時待令醫官及員役等依例供饋事草記允下爲有置醫官及員役等關後錄爲去乎到關即爲磨鍊上下云云〔戶曹○後待令醫官幾員別掌務官壹員書員幾人醫女貳名水工貳名軍士肆名司僕諸員伍名印○排設日書送○撤直後醫官仍直則幾員幾人更爲移文○請直草記允下後供饋草記爲之〕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대령의관(待令醫官) 및 원역(員役) 등에 대하여 규례에 의거하여 음식을 공궤(供饋)하라고 초기(草記)하여 윤허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관 및 원역 등을 관문의 뒷면에 기록했으니, 관문이 도착하면 즉시 마련하여 치러주도록 하라 운운.(호조(戶曹)에 보낸다. ○관문의 뒷면에 대령의관 몇 명, 별장무관(別掌務官) 1명, 서원(書員) 몇 명, 의녀 2명, 수공(水

工) 2명, 군사 4명, 사복시 제원 5명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배설하는 날에 적어 보낸다. ○직숙을 거둔 뒤에 의관이 그대로 직숙할 경우 근무하는 사람이 몇원(員), 몇인(人)인지를 다시 적어 공문을 보낸다. ○직숙하겠다고 청한 초기에 대해 윤허가 내려진 뒤에 공궤에 관한 초기를 올린다)

爲相考事 中宮殿産室廳教是時 諸員伍名 依例定送 以爲使役之地 云云〔司僕寺○ 每名 每日一錢三分式 一朔合三兩九鐜式 輸來 排設日書送〕

상고할 하나.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제원 5명을 규례에 의거하여 정하여 보내어 사역할 수 있게 한다 운운.(사복시에 보낸다. ○인원 각각에게 매일 1전 3푼씩, 한 달에 도합 3냥 9전씩 보낸다. 배설하는 날에 적어 보낸다)

爲輸送事今此産室廳教是時所用 小小盒肆坐 沙鉢甫兒楪匙鐘子各貳 竹椀伍箇 飯鉢里瓶各貳坐 乳朮貳箇 依例輸送之地云云(司饔院○過一朔 則依此數更爲移文○ 當朔初一日 藥物封入所用 蜜朱砂小小盒一 胡桃肉小小盒一 白淸沙鉢一 留置○椀 二 甫兒 沙鉢 楪匙 鐘子 各五瓶一 留用〕

수송하라. 지금 이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가장 작은 합 4좌, 사발、보시기、접시、종자 각 2개, 주발 5개, 밥그릇과 이병(里瓶) 각 2좌, 유출(乳朮) 2개를 규례에 의거하여 수송하도록 하라 운운.(사옹원에 보낸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숫자에 의거하여 다시 공문을 보낸다. ○산달 초하루에 약물을 봉입할 때소용되는, 밀주사(蜜朱砂)를 담는 가장 작은 합 1개, 호도육(胡桃肉)을 담는 가장 작은 합 1개, 백청(白淸)을 담는 사발 1개는 그대로 남겨둔다. ○주발 2개, 보시기、사발、접시、종자 각 5개, 병 1개는 남겨 사용한다)

爲輸送事 産室廳教是時所用 延日礪石一塊 擇其柔軟者 依例輸送云云(軍器寺)

수송하라.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연일(延日)에서 나는 숫돌 한 덩어리는 유연한 것을 골라 규례에 따라 수송하라 운운.(군기시(軍器寺)에 보낸다)

1. 강감(江監) : 용산강 가까이에 있던 군자감의 별창 $m{\omega}$



○知委待令 ○고지하여 대령한다.

○(硯滴二坐 溺缸二坐 私通廚院)

○(연적 2좌, 요강 2좌는 주원(廚院)에 사통(私通)을 보내 가져온다)

鼺鼠皮二令(本院) 白清二沙鉢(本院) 時牌具釘一件 木燭臺四坐 灰板四坐 木枕十 箇(已上 紫門監)

날다람쥐 가죽 2령(본원에서 준비한다), 백청 2사발(본원에서 준비한다), 못을 갖춘 시패(時牌) 1건, 나무 촛대 4좌, 회판(灰板) 4좌, 목침 10개(이상은 자문선공감에서 준비한다)

- 〔頭註: 朱砂 海馬 石燕〕
- (두주: 주사와 해마와 석연도 포함된다)

○小帖取用 ○소첩(小帖)으로 가져다 사용할 것.

〔移設日 地衣十件 用還次 卽爲小帖捧用〕

(이설하는 날에 사용할 지의 10건에 대해 사용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여 즉시 소첩을 써서 받들어 사용한다)

産室廳教是時 待令生薑二十角 毒葱十本 以上 星火進排次(司圃署 菜蔬廛)

산실청을 운영할 때 대령해야 할 것은 생강 20각, 푸른 파 10본이다. 이상을 급히 진배(進排)하라.(사포서(司圃署)나 채소전(菜蔬廛)에 보낸다)

- 〔頭註: 生薑則入於朔圖內入秩〕
- (두주: 생강은 **삭도***(*朔圖) ¹를 통해 들이는 물품에 포함된다)

産室廳教是時所用 胡桃肉次 實胡桃一升 星火進排次(掌苑署)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호도육을 만들기 위해 알이 찬 호도 1되를 급히 진배(進排)하라.(장원서에 보낸다)

産室廳教是時內入次 羌古道魚參拾箇 星火進排次〔樺皮廛 ○此則設廳後先爲知委 當朔初捧置 解娩日卽進上〕

산실청을 운영할 때 들여오기 위한 간고등어 30개를 급히 진배하라.(화피전 (樺皮廛)에 보낸다. ○이것은 산실청을 설치한 뒤에 우선 고지하여 산달 초반에 받들어 두고, 분만일에 즉시 진상한다)

- 〔頭註: 羌古道則入於朔圖進上秩〕
- 〔두주: 간고등어는 삭도에 기재된 진상 물품에 포함되어 있다〕

産室廳教是時 移設所所用 樻子具鎖鑰貳部 鐵烽爐壹坐 剪板貳部 尾帶貳柄 齒瓢子貳箇 省貳箇 陶東海貳坐 陶所羅參坐 黃筆伍柄 翰林風月貳丁 眞漆小盤伍立 白正布白苧布各參尺 撻皮索伍巨里 每日參兩黃燭壹雙式 燈油參升式 劑藥次楮注紙

半張式 書啓次楮注紙壹張式 日用次楮注紙厚白紙各貳張式白休紙肆兩式 三提調書簡次厚白紙貳張式 草日記次白休紙參卷 用還次 擔桶具杖壹坐 書案硯匣各貳坐 硯石貳面 書板貳立 木光明臺貳坐 二立付懸板具足壹部 屛風柒坐 中鼎盖具水瓮各壹坐 紅木衣紅木巾各貳拾件 以上 星火進排次〔紫門監 紫門鉄契 繕工監 司導寺 戶曹 工曹 盤契 濟用監 苧布廛 索契 義盈庫 長興庫 司贍寺 ○此則排設後 卽爲出關〕

산실청을 운영할 때 이설소(移設所)에서 소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자물 쇠름 갖춘 궤짝 2부, 철화로 1좌, 전판(剪板) 2부, 미추(尾箒) 2자루, <mark>치표자(齒</mark> 1 1 2개, 솔 2개, 도기 동이 2좌, 도기 소래기 3좌, 황필(黃筆) 5자루, 한림풍 월(翰林風月)³ 2정, 참옿을 칠한 소반 5닢, 백정포(白正布)와 백저포(白苧布) 각 3척, 달피삭(橽皮索) 5꾸리, 매일 3냥짜리 황촉(黃燭) 1쌍씩, 등유(燈油) 3되 씩, 약을 쌀 때 사용하는 저주지 반장씩, 서계를 올릴 사용하는 저주지 1장씩, 일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저주지와 후백지(厚白紙) 각 2장씩, 백휴지(白休紙) 4 냥씩, 3제조의 서간으로 사용하는 후백지 2장씩, 일기의 초안에 사용하는 백휴 지 3권이고, 사용한 뒤에 돌려줄 물품은 지팡이를 갖춘 질통(擔桶) 1좌, 서안 과 연갑 각 2좌, 벼루 2면, 서판 2닢, 나무로 만든 등잔걸이 2좌, 발을 갖추고 2 닢을 붙인 현판 1부, 병풍 7좌, 뚜껑을 갖춘 중간 크기 솥과 물동이 각 1좌, 홍목 으로 만든 옷과 홍목으로 만든 수건 각 20건이다. 이상의 물품을 급히 진배하 라.(자문감(紫門監), 자문철계(紫門鉄契), 선공감(繕工監), 사도시(司導寺), 호조, 공조, 반계(盤契), 제용감(濟用監), 저포전(苧布廛), 삭계(索契), 의영고 (義盈庫), 장흥고(長興庫), 사섬시(司贍寺)에 보낸다. ○이것은 배설(排設)한 후에 즉시 관문을 보낸다)

産室廳小日記次 楮注紙肆拾張 厚白紙參張 黃染紙壹張 黃筆貳柄 眞墨貳丁 紅鄉 絲貳錢 黃蠟參錢 白休紙貳兩 眞末伍合 以上 星火進排次〔長興庫 工曺 濟用監 義 盈庫 司贍寺 小麥契 ○此則直宿罷後 卽出關〕 산실청의 소일기(小日記)를 작성하기 위한 물품은 저주지 40장, 후백지 3장, 황염지(黃染紙)⁴ 1장, 황필 2자루, 진묵 2정, 홍향사(紅鄕絲) 2돈, 황납 3돈, 백 휴지 2냥, 밀가루 5홉이다. 이상의 물품을 급히 진배하라.(장흥고(長興庫), 공조, 제용감(濟用監), 의영고(義盈庫), 사섬시(司贍寺), 소맥계(小麥契)에 보낸다. 이것은 직숙(直宿)을 파한 후에 즉시 관문을 보낸다)

産室廳捲草陪進教是時 抄奴所着 用還次 紫的頭巾 紫的冠帶 色条帶 各壹件 靴子最大者壹部 函支機壹部 以上 星火進排次〔濟用監 眞絲廛 工曹 平市署〕

산실청에서 권초(捲草)를 배진(陪進)할 때에 초노(抄奴)가 입는 복장은, 사용하고 돌려줄 용도의 자주색 두건, 자주색 갓과 허리띠, 색깔이 있는 조대(条帶)각 1건, 가장 큰 가죽신 1부, 함 지게 1부이다. 이상의 물품을 급히 진배하라. (제용감, 진사전, 공조, 평시서에 보낸다)

- 〔頭註:舊例則招司饔院書史 捲草日早朝負函抄奴一名具鮮明紫的巾服待令事分付矣近則自本院以行首使令擧行〕
- 〔두주: 과거의 예로는 사용원의 서리를 불러 권초하는 날 이른 아침에 함을 질초노(抄奴) 1명에게 선명한 자주색의 두건과 옷을 입혀 대령하라고 분부했는데, 근래에는 본원에서 행수사령(行首使令)이 거행하도록 하였다)

産室廳捲草祭設行教是時所用 用環次 紅木四幅袱伍件 星火進排次〔濟用監〕

산실청에서 권초제를 할 때 소용되는, 사용하고 돌려줄 용도의 4폭짜리 홍목 (紅木) 보자기 5건을 급히 진배하라.(제용감에 보낸다)

¹. 삭도(朔圖): 매달 초하루에 왕궁에 진상하는 각종 물품에 대해 도식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 ↔

2. 치표자(齒瓢子): 안쪽에 여러 줄로 고랑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함지박이다. ↔

3

- 3. 한림풍월(翰林風月): 황해도 해주에서 나던 먹의 이름이다. ↔
- ⁴. 황염지(黃染紙): 황색으로 물들인 종이로 소일기책의 장황을 위한 용도로 보인다. ↔



○捧甘 ○감결(甘結)의 봉입

右甘結 今月某日 産室廳捲草祭設行教是時 樂工等依例齋宿於本司是如可 伊日平明 待開門 待令舉行爲乎矣 萬一遲緩 甘罪不辭〔掌樂院〕

다음은 감결(甘結)입니다. 이달 모일에 산실청에서 권초제(捲草祭)를 행하실 때 악공 등은 규례에 의거하여 본사에서 재계 · 직숙하다가 그날 새벽에 궐문 이 열리기를 기다려 대령하다가 거행하겠습니다. 만일 지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장악원(掌樂院))

右甘結 今月某日 産室廳捲草陪進教是時 內資寺官員一員 清道部將二人 抄奴所騎馬具鞍一匹 扶囑軍引路軍各二名 奉炬軍六名 伊日待開門 待令于差備門外擧行爲 平矣 萬一遲緩 甘罪不辭(內資寺 女阿只氏則內贍寺 內三廳 兵曹馬色 軍契 其人)

다음은 감결입니다. 이달 모일에 산실청에서 권초를 배진(陪進)하실 때 내자시(內資寺) 관원 1명, 청도부장(淸道部將) 2명, 초노가 타는 안장을 갖춘 말 1 필, 부촉군(扶囑軍)과 인로군(引路軍) 각 2명, 봉거군(奉炬軍) 6명은 그날 문이열리기를 기다려 차비문 밖에서 대령하여 거행하겠습니다. 만일 지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남자 아기씨면 내자시, 여자 아기씨면 내섬시, 내삼청(內三廳)¹, 병조 소속 마색(馬色), 군계(軍契), 기인(其人)²)

右甘結 中宮殿産室廳排設時 所用物種進排事啓目 允下爲有置 各其司依後錄極擇 精備 即爲進排爲平矣 萬一遲緩 甘罪不辭

다음은 감결입니다. 중궁전 산실청을 배설할 때 소용되는 각종 물품을 진배하기 위한 계목(啓目)에 대하여 윤허가 내려졌습니다. 각 관사에서는 뒷면의 기록에 의거하여 극진히 선택하고 세밀히 준비하여 즉시 진배하겠습니다. 만일지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後 加莫金貳介 蠇染大鹿皮壹令 黃鄉絲壹兩 黃蠇參錢 黃草伍封 空石拾立 白紋席 拾立 羊毛氈貳浮 六張付油芚壹浮 四張付油芚貳浮 白馬皮壹令[有耳] 生苧參斤 剪邊空石貳立(長參尺玖寸 廣賣尺柒寸 鍮尺) 褙板膏坐 塗朱大登床膏坐 塗朱小登 床壳坐 大圓環具排目蠇染貳介 大銅絲〔隨所入〕 大鈴壹介 紅綿絲三甲所貳巨里 塗 朱雲梯壹部 架子伍部(水剌間取用)擔乼拾肆巨里(排設房取用)長道里壹介 所串 膏介 執筒膏介 懸草門所用三寸釘參介 紅鄉絲三甲所拾把 產圖及各樣付貼次草注 紙拾張 白休紙肆兩 紅輕光紬參尺 藍輕光紬參寸 紅扇子紙壹張 靑扇子紙半半張 片臙脂膏張 紅紬二幅袱貳件 紅木三幅袱貳件 耳也膏介 細繩伍兩 海馬石燕子纓子 次真紅唐絲壹兩 黃連甘草湯所用白鼎紬壹尺 白正布壹尺伍寸 白苧布壹尺伍寸 胡 桃肉入盛次白絹壹尺 產圖改付貼所用草注紙肆張 紅紬四幅袱壹件 紅木五幅袱壹 件 懸草時所用紅漆無盖函壹坐(長壹尺捌寸 廣壹尺 高肆寸 鍮尺) 紅綿絲三甲所貳 巨里 傅纏次鏡面朱砂膏兩重膏塊 石雄黃膏兩重膏塊 洗浴時所用鍮東海膏坐 白正 布參尺 白苧布伍尺 阿只氏洗浴時所用李根壹本 桃根壹本 梅根壹本 猪膽壹部 鍮 所羅壹坐 白絹參尺 白正布壹尺伍寸 白苧布壹尺伍寸 洗胎及封褁所用藍綿紬貳尺 白正布壹尺伍寸 白苧布壹尺伍寸 香醞酒參瓶 古銅錢壹分 油紙壹張 四耳內白缸盖 具壹坐 四耳外白缸盖具壹坐 陶東海壹坐 陶所羅壹坐 大陶豆毛壹坐 瓢子貳介 省 壹介 白馬尾篩賣部 四耳陶豆毛盖具賣坐 甘糖壹斤 鍮火爐賣坐 火箸賣部 去核參 斤 草注紙參張 常毛氈貳立 紅鄉絲三甲小纓子拾把 紅木牌壹介(長參寸 廣壹寸參 分 鍮尺] 各樣物種 表入次紅木四幅袱貳件 紅紬三幅袱貳件 紅綿絲三甲所貳巨里 印(戶曹 紫門監 狗皮契 濟用監 義盈庫 司僕草契 紫門鐵契 立廛 紙廛 長興庫 尚衣 院 修理契 馬皮契 銅絲契 東床廛 豊儲倉 司贍寺 彩色契 細繩契 真絲廛 苧布廛 平 市署 唐材契 內資寺 司饔院 司導寺 繕工監 綿子契 綿紬廛 水刺間 排設房 牛毛氈 契 軍資監 廣興倉 惠民署 典醫監 工曹〕

뒷면의 기록이다. 가막쇠 2개, 납염(嶱染)한 대록피(大鹿皮) 1령, 황향사(黃鄕絲) 1냥, 황납(黃嶱) 3돈, 황초(黃草) 5봉, 빈 가마니 10닢, 백문석(白紋席) 10 닢, 양탄자 2부, 6장을 붙인 유둔(油竜) 1부, 4장을 붙인 유둔 2부, 백마피(白馬皮) 1령(귀가 있는 것), 생모시 3근, 가장자리를 자른 가마니 2닢(유척으로 길

이 3척 9촌, 너비 1척 7촌), 배판(褙板) 1좌, 붉은색을 칠한 대등상(大登床) 1 좌, 붉은색을 칠한 소등상(小登床) 1좌, <mark>배목(排目)</mark>³을 갖추고 밀납을 먹인 큰 둥근 고리 2개, 굵은 구리 철사(들어가는 바에 따른다), 큰 방울 1개, 붉은 면사 (綿絲)를 세 겹으로 꼰 밧줄 2꾸리, 붉은색을 칠한 구름사다리 1부, 가자(架子) 5부(수라간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담줄 14꾸리(배설방(排設房)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장도리 1개, 송곳 1개, 집게 1개, 현초문(懸草門)에 사용할 3촌의 못 3개,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 10발, 산도 및 기타 부착물을 붙이기 위한 초주지 10장, 백휴지 4냥, 붉은색 경광주(輕光紬) 3척, 남색 경광주 3촌, 붉은색 부채종이 1장, 푸른색 부채종이 1/4장, **편연지(片臙脂)⁴ 1**장, 2폭의 붉 은 명주 보자기 2건, 3폭의 홍목 보자기 2건, 이야(耳也) 1개, 가는 끈 5냥, 해마 와 석연자의 묶을 끈으로 사용할 진홍당사(眞紅唐絲) 1냥, 황련감초탕에 쓸 백 정주(白鼎紬) 1척, 백정포(白正布) 1척 5촌, 백저포(白苧布) 1척 5촌, 호도육을 담기 위한 백견(白絹) 1척, 산도를 다시 붙일 때 사용할 초주지 4장, 4폭의 붉은 명주 보자기 1건, 5폭의 홍목 보자기 1건, 현초(懸草)에 사용하기 위한 붉은색 칠을 한 뚜껑 없는 함 1좌(유척으로 길이 1척 8촌, 너비 1척, 높이 4촌), 붉은 면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 2꾸리, 탯줄을 묶기 위한 경면주사(鏡面朱砂) 1냥쭝 한 덩어리, 석웅황 1냥쭝 한 덩어리, 산모 목욕할 때 사용할 놋동이 1좌, 백정포 3척, 백저포 5척, 아기씨 목욕할 때 사용할 오얏나무 뿌리 1본, 복숭아나무 뿌 리 1본, 매화나무 뿌리 1본, 멧돼지 쓸개 1부, 놋소래기 1좌, 백견 3척, 백정포 1 척 5촌, 백저포 1척 5촌, 태반을 씻고 쌀 때 사용할 남색 면주 2척 백정포 1척 5 촌, 백저포 1척 5촌, 향온주(香醞酒) 3병, 오래된 동전 1푼, 유지(油紙) 1장, 네 귀가 있고 뚜껑 있는 안쪽 백자 항아리 1좌, 네 귀가 있고 뚜껑 있는 바깥 백자. 항아리 1좌, 도기 동이 1좌, 도기 소래기 1좌, 큰 도기 두멍 1좌, 바가지 2개, 솔 1개, 백마 꼬리로 만든 체 1부, 네 귀가 있고 뚜껑 있는 도기 두멍 1좌, 엿 1근, 놋화로 1좌, 부젓가락 1부, 씨를 뺀 솜 3근, 초주지 3장, 상모전(常毛氈) 2닢, 붉 은 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꼰 가는 끈 10발, 홍목패(紅木牌) 1개.[유척으로 길이 3촌, 너비 1촌 3푼), 각종 물품을 싸기 위한 4폭의 홍목 보자기 2건, 3폭의 붉은 색 명주 보자기 2건,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 2꾸리. 날인.(호조(戶

曹), 자문감(紫門監), 구피계(狗皮契), 제용감(濟用監), 의영고(義盈庫), 사복 초계(草契), 자문철계(紫門鐵契), 입전(立廛), 지전(紙廛), 장흥고(長興庫), 상 의원(尚衣院), 수리계(修理契), 마피계(馬皮契), 동사계(銅絲契), 동상전(東床廛), 풍저창(豊儲倉), 사섬시(司贍寺), 채색계(彩色契), 세승계(細繩契), 진사전(眞絲廛), 저포전(苧布廛), 평시서(平市署), 당재계(唐材契), 내자시(內資寺), 사옹원(司饔院), 사도시(司導寺), 선공감(繕工監), 면자계(綿子契), 면주전(綿紬廛), 수라간(水刺間), 배설방(排設房), 우모전계(牛毛氈契), 군자감(軍資監), 광흥창(廣興倉), 혜민서(惠民署), 전의감(典醫監), 공조(工曺))

- 〔頭註: 壬申釐正〕
- (두주: 임신년(고종9: 1872)에 정리한 것이다)
- 〔頭註: 朱砂石雄黃 本院無入用者 故自辛未 雲峴宮受來矣 今則出關〕
- (두주: 주사와 석웅황은 본원에 들여와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미년(고 종8년: 1871)부터 운현궁에서 받아왔는데 지금은 관문을 보낸다)

右甘結 産室廳教是時 捲草祭所用物種 進排事啓目 允下爲有置 各其司官員依後錄 精備封褁 躬親進排爲平矣 萬一遲緩 甘罪不辭

다음은 감결입니다. 산실청을 운영할 때 권초제에 사용할 각종 물품을 진배(進排)하겠다고 올린 계목(啓目)에 대해 윤허가 내려졌으니, 각 관사의 관원들은 뒷면의 기록에 의거하여 세밀히 준비하고 싸서 몸소 진배하겠습니다. 만일 지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後命白米壹百斗命絹拾疋命紬拾疋命白絲拾斤命正銀壹百兩 鍮大燭臺壹雙 鍮香爐壹坐 鍮香盒壹坐 鍮大也壹坐 沈香壹兩 四兩黃燭壹雙 香案壹坐 高足床壹坐 (尚衣取用) 畵邊油紙陸張 塗朱大板子伍立 塗朱馬木貳坐 白紋九張付地衣臺浮 白紋拜席貳立 捲草入盛次全漆有盖圅壹坐(長壹尺捌寸伍分 廣壹尺高肆寸參分 鍮尺) 白苧帒壹件(長參尺) 紅木五幅袱壹件 紅紬三幅袱壹件 函外褁次紅紬六幅袱壹件 紅鄉絲三甲所壹巨里 紅綿絲三甲所壹巨里 紅木牌壹介(長參寸廣壹寸參分

输尺〕覆函次紅紬五幅袱壹件命白米一百斗分入拾斗式所用白苧甲帒拾件四油芚 壹浮紅木五幅袱伍件捧草陪進時所用大中炬陸柄印〔戶曹工曹濟用監唐材契立 廛長興庫尚衣院紫門監義盈庫其人平市署〕

뒷면의 기록이다. 명백미(命白米) 100말, 명견(命絹) 10필, 명주(命紬) 10필, 명백사(命白絲) 10근, 명정은(命正銀) 100냥, 큰 놋촉대 1쌍, 놋향로 1좌, 놋향합 1좌, 놋대야 1좌, 침향 1냥, 4냥짜리 황촉 1쌍, 향안(香案) 1좌, 고족상(高足床) 1좌(상의원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화변유지(畵邊油紙) 6장, 붉은색을 칠한 큰 판자 5닢, 붉은색을 칠한 말목 2좌, 백문(白紋)을 9장 붙인 지의 1부, 백문 배석(白紋拜席) 2닢, 권초를 담기 위한 용도로 전체 옻칠한 뚜껑 있는 함 1좌 (유척으로 길이 1척 8촌 5푼, 너비 1척, 높이 4촌 3푼), 백저 포대 1건(길이 3 척), 5폭의 홍목 보자기 1건, 3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 1건, 함을 싸기 위한 6 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 1건,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 1꾸리, 붉은색면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 1꾸리, 홍목패 1개(유척으로 길이 3촌, 너비 1촌 3 푼), 함을 덮기 위한 5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 1건, 명백미 100말을 10말씩 나누어 담는 데 사용할 백저 겹포대 10건, 사유둔(四油電) 1부, 5폭의 홍목 보자기 5건, 권초를 배진할 때 사용할 큰 횃불과 중간 횃불 6자루. 날인.(호조, 공조, 제용감(濟用監), 당재계(唐材契), 입전(立廛), 장흥고(長興庫), 상의원(尚衣院), 자문감(紫門監), 의영고(義盈庫), 기인(其人), 평시서(平市署))

- 〔頭註: 壬申釐正〕
- 〔두주: 임신년(고종9년 : 1872)에 정리한 것이다)
- 〔頭註: 沈香 本院無入用者 故近則出關〕
- 〔두주: 침향(沈香)은 본원에 들여와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관문을 보낸다〕

 $^{^{1}}$. 내삼청(內三廳) : 왕실의 수비와 임금의 호위를 담담했던 내금위ㆍ겸사복

[·] 우림위를 이른다. ←

- ². 기인(其人) : 관청에 숯과 땔나무를 바치던 경저리(京邸吏)리 또는 그러한 계를 이른다. ↔
- ³. 배목(排目): 문고리를 걸어 자물쇠를 꽂게 한 철물로, 한 끝은 둥근 구멍을 내고 다른 끝은 못 모양으로 되어 있다. ↔
- ⁴. 편연지(片臙脂): 붉은 물을 솜에 먹여 말렸다가 끓는 물에 담아 우려서 사용하는 중국산 물감. ↔

○排設時 笏記 ○배설(排設)할 때의 홀기

正時前刻三提調 史官 承候官 産室醫官 別掌務官 俱以黑團領 詣差備門外 三提調以下入來事命下後 別掌務官奉付貼諸圖(表紅紬袱) 書員陪物種(入盛架子) 入詣産室殿前南庭序立後 與大殿次知承傳色 當殿次知承傳色 産室次知內官 奏時官 泛鐵官 擇日官 入詣産室 泛鐵定方位後 排付二十四方位字 而北壁上先付産圖 次付催生符 次付借地法 又付安産室吉方於某方 又付藏胎衣吉方於某方 錠加莫金於安産室吉方 而仍懸馬轡 房堗先舗黃草 次舖空石 次舖草席 次舖羊毛氈 次舖油芚 次舖白馬皮 而頭向某方(安産室吉方) 尾向某方(藏胎衣吉方) 白馬皮頭左右 舖鼺鼠皮 頭下散舖生苧 次舖剪邊空石(從白馬皮頭尾) 護産首醫於房外 北向跪讀借地法三遍後退 仍詣懸草門 排錠三寸釘 以紅綿絲三甲所橫繫左右 以紅鄉絲三甲所繫於紅綿絲而垂下 還詣産室 錠圓環於殿前柱上 鐵絲繫於圓環 離圓環一把餘 以紅綿絲三甲所繫於鐵絲而垂下 兩條以爲引鈴之備 抵鐵絲于差備外醫官直所 而立竹柱 柱上錠小圓環 鐵絲繫於圓環 離圓環一把餘懸大鈴

정시 전각에 3제조, 사관, 승후관(承候官), 산실청 의관, 별장무관(別掌務官)은모두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차비문 밖에 나아간다. '3제조 이하는 들어오라'는 명이 내려지면 별장무관은 붙일 여러 그림(붉은 색 명주 보자기에 싸서둔다)을 받들고, 서원(書員)은 각종 물건(가자에 담아둔다)을 받들고 산실전앞 남쪽 뜰에 가서 차례로 선 뒤에 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 해당 전궁의담당 승전색, 산실의 담당 내관, 주시관(奏時官), 범철관(泛鐵官), 택일관(擇日官)과함께 산실에 들어간다. 범철관이 방위를 정한후에 24방위에 해당하는 글자를 붙인다. 북쪽 벽위에 먼저 산도를 붙이고 다음에 최생부, 그 다음에 차지법을 붙이고, 또 아무개 방향으로 안산실길방(安産室吉方)을 붙이고 아무개방향에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을 붙인다. 안산실길방에 가막쇠를 박고 거기에 말고삐를 매단다. 방구들에 황초를 먼저 깔고 다음에 빈 가마니를, 다음에 명석을 다음에 양탄자, 다음에 기름 장판지를, 다음에 백마피(白馬皮)를 까는

데, 백마피의 머리는 아무개 방향(안산실길방)을 향하게 하고 꼬리는 아무개 방향(장태의길방)을 향하게 한다. 백마피 머리의 좌우에 날다람쥐 가죽을 깔고, 백마피 머리 아래에 생모시를 펴서 깐다. 다음으로 가장자리를 자른 빈 가마니를 깐다.(백마피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호산관으로서의 수의(首醫)는 방밖에서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은 뒤 차지법을 세 차례 읽은 후에 물러난다. 이어 현초문에 나아가 3촌짜리 못을 줄지어 박고는 붉은색 면사를 세겹으로 꼰 밧줄을 기둥 좌우에 횡으로 건 뒤에 붉은색 향사(鄉絲)를 세겹으로 꼰 밧줄을 붉은색 면사에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다. 다시 산실로 돌아와 산실전 앞 기둥 위에 둥근 고리를 박고 둥근 고리에 철사를 건다. 둥근 고리에서 한 발 남짓 떨어진 곳에 붉은색 면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을 철사에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다. 나 방울을 당기기 위한 예비로 이렇게 두 끈을 준비하고, 철사를 차비문 밖의 의관 숙직소에 이르게 한 뒤에 대나무 기둥을 세운다. 대나무 기둥 위에 작은 둥근 고리를 박고 철사를 둥근 고리에 묶은 뒤에 둥근 고리에서 한 발 남짓 떨어진 곳에 큰 방울을 매단다.

- 〔頭註: 定方位時 先付東西南北字後 排付二十四方位字〕
- (두주: 방위를 정할 때에는 먼저 동, 서, 남, 북의 글자를 붙인 후에 24방위에 해 당하는 글자를 배열하여 붙인다)
- 〔頭註:安産室吉方 卽當月月德方 藏胎衣吉方 卽月空方○月德月空 或有避忌之時〕
- 〔 두주: 안산실길방(安産室吉方)은 해당 월의 월덕(月德) 방향이고 장태의길방 (藏胎衣吉方)은 월공(月空) 방향이다.○월덕과 월공을 혹 금기하여 피하는 때도 있다〕
- 〔頭註: 産圖改付貼時 亦隨當月月德月空方〕
- (<mark>두주</mark>: 산도를 다시 붙일 때에도 역시 해당 월의 월덕과 월공의 방향을 따른 다)
- 〔頭註: 某方見上〕

- (두주: 어떤 방향인지는 위에 보인다)
- 〔頭註: 紅鄉絲三甲所一把式三條 各繫釘三處而垂下〕
- 〔두주: 붉은색 향사(鄕絲)를 세 겹으로 꼰 밧줄 1발씩 3줄을 각각 세 곳의 못에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다)



○産圖改付貼時 笏記 ○산도를 고쳐 붙일 때의 홀기

正時前刻三提調 史官 承候官 産室醫官 別掌務官 與大殿次知承傳色 當殿次知承傳色 産室次知內官 俱以黑團領 率書圓等 入詣産室 看審移舖 而産圖改印 仍付北壁上 催生符改印 付於其次 借地法改書 付於其次 改付安産室吉方於某方 改付藏胎衣吉方於某方 改錠加莫金於安産室吉方 移懸馬轡 移舖白馬皮 而某首某尾 白馬皮頭左右 舖鼺鼠皮 頭下散舖生苧 移舖剪邊空石(從白馬皮頭尾) 護産首醫 於房外北向跪讀借地法 三遍後退(奏時官 泛鐵官 擇日官 並待令于差備門外)

정시 전각에 3제조, 사관, 승후관(承候官), 산실청 의관, 별장무관(別掌務官)과 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산실의 담당 내관이 모두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서원 등을 거느리고 산실에 들어가 자세히 옮겨 포설할 곳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산도를 다시 인쇄하여 북쪽 벽 위에 붙이고 최생부를 다시 인쇄하여 그 다음에 붙이며 차지법을 다시 써서 그 다음에 붙인다. 안산실길방(安産室吉方)을 아무개 방향에 고쳐 붙이고 장태의길방(藏胎 衣吉方)을 아무개 방향에 고쳐 붙이고 장태의길방(藏胎 衣吉方)을 아무개 방향에 고쳐 보아 말고삐를 옮겨서 건다. 백마피를 옮겨서 깔되 머리는 아무개 방향이고 꼬리는아무개 방향이다. 백마피 머리의 좌우에 날다람쥐 가죽을 깔고, 백마피 머리 아래에 생모시를 펴서 깔며, 가장자리를 자른 빈 가마니를 옮겨 깐다.(백마피 머리부터 꼬리까지) 호산관으로서의 수의는 방밖에서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차지법을 세 차례 읽은 후에 물러난다.(주시관(奏時官), 범철관(泛鐵官), 택일관(擇日官)은 모두 차비문 밖에서 대령한다)

- 〔頭註: 安產藏胎方 見上排設時笏記頭註〕
- (<mark>두주</mark>: 안산실길방과 장태의길방은 위의 배설할 때의 홀기 부분 두주(頭註)에 보인다)
- 〔頭註: 首從月德 尾從月空〕
- 〔두주: 머리는 월덕(月德) 방향을 따르고 꼬리는 월공(月空) 방향을 따른다〕



○洗胎時笏記 ○태반을 씻을 때의 홀기

洗胎時 自內取月德某方水 令醫女洗百度後 以酒更洗 古銅錢一箇 以字面先入內胎 缸底中央 仍入洗胎 以油紙藍綿紬覆缸口 以紅纓子結封 自內封標 覆缸盖 以紅纓子貫缸四耳及盖丁四穴結封 自內封標出送後 産室醫官 與大殿次知承傳色 當殿次知承傳色 産室次知內官 俱以黑團領 率書員等 詣産室殿前眼同 先於外白缸底籍以白綿花 以內白缸入於外白缸中 以白綿花堅隔齊缸口 以草注紙覆綿花上 垂下堅隔勿動 又以白綿花厚覆紙上 甘糖作片如缸口圓切 比缸口四面剩一指許 燻於熱火 待其柔和 覆缸口 且以白綿花厚覆甘糖上 覆缸盖 以紅纓子貫缸四耳及盖丁四穴 二甲結封後 書當殿次知承傳色(臣)姓 産室醫官(臣)姓 而並着署 懸紅木牌於缸盖丁上前面以雙行書大年號某年某月某日 中宮殿誕生元子阿只氏胎 後面並列書次知承傳色等(臣)姓名 產室醫官等(臣)姓名 後四耳陶豆毛中舖常毛氈一立 以胎缸入於陶豆毛 內四面堅隔 而又以常毛氈一立覆之 然後覆盖 以紅纓子貫豆毛四耳及盖丁四穴 十字結封 書謹封 當殿次知承傳色着署 入之還安於月德方而退

태반을 씻을 때에 대내에서 월덕(月德)이 있는 아무개 방향의 물을 가져와 의녀로 하여금 백번 씻게 한 후에 술로 다시 씻는다. 오래된 엽전 1개를 글자가 있는 면으로 먼저 안쪽 태항아리 바닥 중앙에 넣고 씻은 태반을 넣은 뒤 유지(油紙)와 남색 면주(綿紬)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는 붉은 끈으로 묶어 봉한다. 대내(大內)에서 봉표(封標)하고 태항아리 뚜껑을 덮은 후 붉은 끈으로 항아리네 귀와 뚜껑의 꼭지 부분에 있는 4개 구멍을 꿰어서 묶어 봉한다. 대내에서 봉표하여 내보낸 후에 산실청 의관, 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산실(産室)의 담당 내관이 모두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서원(書員) 등을 거느리고 산실전 앞에 나아가 안동(眼同)한다. 먼저 바깥 백자 태항아리 바닥에 흰 목화솜을 빨고 안쪽 백자 태항아리를 바깥 백자 항아리에 넣는다. 안쪽 백자 태항아리와 바깥 백자 테항아리의 틈에 흰 목화솜을 빽빽이 넣어 항아리 입구까지 채운 뒤 초주지로 목화솜 위를 덮어 내려 움직이지 않게

견고히 막는다. 또 흰 목화솜으로 종이 위를 두텁게 덮고 엿을 태항아리 입구와 같이 둥글게 잘라 편을 만들되 태항아리 입구에 비해 4면을 한 손가락쯤 남게 만든다. 여기에 녹아내릴 때까지 열을 가하여 태항아리 입구를 덮는다. 또흰 목화솜을 엿 위에 두텁게 덮은 뒤에 태항아리 뚜껑을 덮고 붉은색 끈으로 태항아리의 네 귀와 뚜껑 꼭지의 네 구멍을 꿰어 두 겹으로 묶어서 봉한다. '해당 건궁의 담당 승전색(신)의 아무개 성씨, 산실 의관(신)의 아무개 성씨'라고쓰고 모두 서명한다. 태항아리 뚜껑의 꼭지 위에 홍목패(紅木牌)를 매달고 전면에는 쌍행으로 '중국 연호 모년 모월 모일 중궁전께서 탄생하신 원자 아기씨의 태'라고 적고, 후면에는 '담당 승전색 등(신) 아무개, 산실 의관 등(신) 아무개'라고 나란히 적는다. 그후에 네 귀가 있는 도기 두멍 안에 상모전(常毛氈) 1 보을 깔고 태항아리를 도기 두멍에 넣은 뒤에 안쪽 4면의 틈을 견고히 막고 다시 상모전 1보으로 덮는다. 그런 후에 뚜껑을 덮고 붉은색 끈으로 도기 두멍의네 귀와 뚜껑의 꼭지 네 구멍을 꿰어 십(十)자 모양으로 묶어 봉한 뒤 '삼가 봉합니다.'라고 적고,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이 서명하고 들여 월덕의 방향에다시 안치하고 물러난다.

- 〔頭註: 取月德方水 例也 而或當月月德 亦有避忌方 從他方取水 下同〕
- 〔두주: 월덕(月德) 방향의 물을 취하는 것은 상례이나, 혹 당월의 월덕에 꺼리는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에서 물을 취한다. 아래도 같다)
- 〔 <mark>頭註</mark>: 自內封標 則癸酉因下敎 承候官書吉字 甲戌又因下敎 産室次知承傳色 着署 下同〕
- 〔두주: 대내(大內)에서 봉표(封標)하는 것은 계유년(고종10: 1873)에 하교로 인하여 승후관이 '길(吉)'자를 쓴다. 갑술년(고종11: 1874)에도 하교로 인해 산 실의 담당 승전색이 서명하였다. 아래도 같다)
- 〔 <mark>頭註: 癸酉因下敎 女阿只氏 則以公主書之 乙亥又因下敎 男阿只氏 以大君書之 ○捲草紅木牌同〕</mark>
- (두주: 계유년(고종10: 1873)에 하교로 인하여 여자 아기씨는 '공주'로 적었다.

을해년(고종12: 1875)에는 하교로 인하여 남자 아기씨는 '대군'으로 적었다. ○권 초할 때의 홍목패도 같다)



○捲草祭時笏記 ○권초제(捲草祭)를 거행할 때의 홀기

捲草祭時 産室醫官 別掌務官 與大殿次知承傳色 當殿次知承傳色 産室次知內官 俱以黑團領 率書員等 入詣産室 於廳事外 先舖地衣 次置馬木於左右 加排大板子 五立於其上(南向排設) 舖畵邊油紙 北端以兩行列置命白米十包 右置命絹十疋 左 置命紬十疋 中置命絲十斤命正銀一百兩 香案上設香爐香盒而具沈香 左右燭臺 安 四兩燭而不燃火 又排高足床於香案之左 舖拜席於香案前 又舖拜席於階下後〔捲草 官 預先留待於差備門外〕 謁者醫官引捲草官 就階下位 引儀〔笏記舉行〕呼唱再拜 〔樂工鼓吹〕 謁者引捲草官 盥洗後 親奉捲草 入於函中 書員奉函先導 謁者引捲草 官 復就階下位 謁者奉函 安於高足床上(先舖紅紬六幅袱) 捲草官盥洗後 詣香案前 焚香 仍降復位 引儀呼唱再拜訖 謁者引搽草官退 出後 醫官及承傳色率書員等眼同 奉捲草入盛白苧帒結封 封上書醫官(臣)姓名而着署 以紅綿紬長三尺二幅袱褁之 以紅纓子當中結封 封上書醫官(臣)姓名而着署 仍安於函中而覆函盖 以紅鄉絲三 甲所當中結封 封上書醫官(臣)姓名而着署 又以六幅紅紬袱褁函結封 封上書當殿 次知承傳色(戶)姓名而着署 懸紅木牌 前面以雙行書大年號某年某月某日中宮殿 誕生元子阿只氏捲草 書員奉函出來 抄奴着紫的巾服〔待令于差備門外〕 具紅鄉絲 三甲所負函 又以紅紬五幅袱覆盖而出 待令醫官陪從 至差備門外 捲草官及內資寺 官員陪從 部將二員 前導引路軍二名 樂工鼓吹 奉炬軍六名 扶囑軍二名 序立 進往 于內資寺 捲草物種及香卓等物 並留入於內

권초제를 거행할 때 산실청 의관, 별장무관(別掌務官), 대전의 담당 승전색,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산실의 담당 내관은 모두 흑단령 차림으로 서원 등을 거느리고 산실에 들어간다. 청사 밖에 먼저 지의(地衣)를 깔고 다음으로 좌우에 말목(馬木)을 설치한 뒤 그 위에 큰 판자 5닢을 배설(排設)한다.(남향으로 배설한다) 화변유지(畵邊油紙)를 깔고 그 북쪽 끝에 두 줄로 명백미(命白米) 10포를 줄지어 두고, 오른쪽에는 명견(命絹) 10필, 왼쪽에는 명주(命紬) 10필, 가운데에는 명사(命絲) 10근과 명정은(命正銀) 100냥을 둔다. 향안(香案) 위에

는 향로와 향합을 놓고 침향을 갖추어두고, 좌우 촛대에 4냥짜리 초를 두되 불 을 붙이지는 않는다. 또 향안의 왼쪽에 고족상(高足床)을 배설하고 향안 앞에 배석(拜席)을 깔며 계단 아래 뒤쪽에도 배석을 깐다.(권초관은 미리 차비문 밖 에서 머무르며 기다린다) 알자(謁者) 의관(醫官)이 권초관(捲草官)을 인도하 여 계단 아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면 인의(引儀)(홀기를 거행하는 사람)가 '재 배(再拜)'라고 외친다.(악공이 음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권초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한 뒤에 권초를 받들어 함 안에 넣게 한다. 서원이 함을 받들어 먼저 인도하면 알자가 권초관을 인도하여 다시 계단 아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알 자가 함을 받들어 고족상(먼저 6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를 깔아둔다) 위에 놓아두면 권초관이 손을 씻고 향안 앞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의가 '재배'라고 외치는 것이 끝나면 알자가 권초관을 인도하여 물 러난다. 나온 뒤에 의관과 승전색이 서원 등을 인솔하여 안동(眼同)하고, 권초 를 받들어 백저 포대에 넣고 묶어 봉한다. 봉한 곳 위에 '의관(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 뒤에 길이 3척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 2폭으로 싸고 붉은색 끈으 로 가운데를 묶어 봉한다. 봉한 곳 위에 '의관(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다. 이것을 함 안에 안치하고 함 뚜껑을 덮은 뒤 붉은색 향사(鄕絲)를 세겹으로 꼰 밧줄로 가운데를 묶어 봉하고, 봉한 곳 위에 '(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다. 또 6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로 함을 싸서 묶어 봉하고, 봉한 곳 위에 '해당 전 궁의 담당 승전색 [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다. 홍목패를 매달되 전면에 는 쌍행으로 '중국 연호 모년 모월 모일 중궁전께서 탄생하신 원자 아기씨의 권초'라고 적는다. 서원이 함을 받들고 나오면 자주색 두건과 의복 차림의 노 복(차비문 밖에서 대령한다)이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로 함을 지는 데, 5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로 덮은 뒤에 나간다. 대령의관(待令醫官)이 배 종(陪從)하다가 차비문 밖에 이르면 권초관과 내자시(內資寺)의 관원도 배종 한다. 부장 2명, 전도인로군(前導引路軍) 2명, 연주하는 악공, 봉거군(奉炬軍) 6명, 부촉군(扶囑軍) 2명은 차례로 서서 내자시로 행진한다. 권초제에 소용되 는 각종 물품 및 향탁(香卓) 등의 물건은 모두 대내(大內)에 남겨둔다.

- 〔頭註: 黃燭本六兩 而自辛未减二兩〕
- 〔두주: 황촉(黃燭)은 본래 6냥이었으나 신미년(고종8: 1871)부터 2냥을 감했 다〕
- 〔頭註: 公主阿只氏則內贍寺官員陪從下同〕
- (두주: 공주 아기씨의 경우는 내섬시의 관원이 배종한다. 아래도 같다)



○直宿罷後 卽出關秩 ○직숙(直宿)을 파한 후 즉시 내보내 는 관문들

〔産室廳所用會減公事 亦卽出關〕

(산실청에서 소용되는 회감(會減) 공문에 대해서도 즉시 관문을 낸다)

元子宮供上日次薏苡公事(每朔 薏苡二斗五升 草注紙六張式)

원자궁(元子宮)에 올리는 규정된 율무에 대한 공문.(매달 율무 2말 5되, 초주 지 6장씩)

元子宮供上臘藥樻及南飛介公事

원자궁에 올리는 납약궤(臘藥樻) 및 남비개(南飛介)에 대한 공문

- 〔頭註: 甲戌因下敎 樻子板則紅漆 而四面邊隅 則以細行黑漆〕
- 〔두주: 갑술년(고종11년 : 1874)에 하교로 인하여 궤자판(樻子板)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4면의 가장자리와 모퉁이는 가늘고 검게 칠하였다〕

稧展物力錢求請公事(發簡 各司各邑 而無邸居多 則都聚上送發關)

계병(稧屛)을 제작하기 위한 물력전(物力錢)을 청구하는 공문.〔발간(發簡)은 각 사와 각 읍에서 하되 집이 없거나 사는 사람이 많으면 모두 모아 상송(上送) 하거나 관문을 보낸다〕

爲相考事 中宮殿産室廳教是時 別單判付內 待令書員延鳳仁 帖加惠局兼役事奉承 傳爲有置 延鳳仁本廳書吏差下之地 宜當云云〔甲戌二月十五日移文宣惠廳〕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별단(別單)을 판부(判付)하여 들인 내용에 "대령서원인 연봉인(延鳳仁)은 체가자하여 혜국(惠局)에서 겸역하게 하라는 전지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연봉인을 본청의 서리(書東)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운운." 하였다.(갑술년(고종11년 : 1874) 2월 15일 선혜청(宣 惠廳)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佛手散 불수산

當歸六戔 川芎四戔 加益母草二戔

당귀 6돈, 천궁 4돈에 익모초 2돈을 더한다.

右作一貼 水一升二合 臨熟入酒少許 煎至四合 去滓 不拘時 溫進

이상을 1첩으로 하여 물 1되 2홉을 붓고 익을 즈음에 술을 조금 넣은 뒤에 4홉이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하게 복용하다.



達生散 달생산

大腹皮酒洗二菱 甘草炙一菱五分 當歸白朮白芍藥各一菱 人蔘陳皮紫蘇葉枳殼縮砂研各五分

술로 씻은 대복피 2돈, 구운 감초 1.5돈, 당귀 · 백출 · 백작약 각 1돈, 인삼 · 진 피 · 자소엽 · 지각 · 축사연 각 5푼.

右作一貼 水一升二合 入青蔥五葉 煎至四合 去滓 不拘時 溫進

이상을 1첩으로 하여 물 1되 2홉을 붓고 청총(靑蔥) 5엽을 넣은 뒤 4홉이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龍腦安神丸一劑 용뇌안신환 1제

白茯神三兩 人蔘地骨皮麥門冬甘草各二兩 桑白皮犀角鎊各一兩 牛黃五戔 龍腦麝香各三菚 朱砂馬牙硝各二菚 金箔三十五片

백복신 3냥, 인삼 · 지골피 · 맥문동 · 감초 각 2냥, 상백피 · 서각방 각 1냥, 우황 5돈, 용뇌 · 사향 각 3돈, 주사 · 마아초 각 2돈, 금박 35편.

右末蜜丸如彈子 金箔爲衣 每一丸 冬溫水夏凉水化下

이상을 갈아서 탄환만한 크기의 밀환을 만든 뒤 금박을 입힌다. 매 1알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먹는다.

牛黃膏 우황고

朱砂鬱金各三戔 牛黃二戔五分 牧丹皮二戔 甘草一戔 龍腦五分

주사 ㆍ 울금 각 3돈, 우황 2.5돈, 모란피 2돈, 감초 1돈, 용뇌 5푼.

右末蜜丸如皂子 每一丸 井水化下 皂子即兩作四十丸

이상을 갈아서 상수리만한 크기의 밀환을 만든다. 매 1알을 우물물로 먹는다. 상수리만한 것은 1냥으로 40환을 만든다.



해제

산실청의 유래

『산실청총규』는 조선시대 산실청에 대한 일종의 업무 규정집이다. 산실청이란 조선 시대 빈궁(중전과 세자빈)이 분만 할 경우에 산달 세 달 전에 배설하는 임시 기구였 다. 산실청은 왕명으로 일관(日官)이 택일한 날짜에 배설되어 산후 7일 째 되는 날 권초례를 행하고 나서 파하였다. 산실청은 주로 내의원의 기존 원역으로 구성되지 만, 일부 직임에선 권초관(捲草官)처럼 외부 원역으로도 구성되었다. 1 산실청은 중 종 조에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련 내용이 보이는데 당시에는 중궁과 세자 빈이 임신한 달에 배설하여. ² 예정임 석 달 이전에 배설하는 19세기와는 개설 시기 의 차이가 있다. 빈궁이 아닌 후궁의 경우에는 호산청(護産廳)을 두었는데 분만 예 정 달에 배설되고, 속한 원역의 지위도 낮고 수도 적었다. 이 밖의 궁방(宮房)은 따로 청(廳)을 배설하지 않고 의관 한 사람에 의해 호산만 이루어졌다. 3 권초제는 권초(산 자리를 거두는 일) 전에 선생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지내는 제사로 권초제와 권 초를 포함한 일체는 권초례라 불렀다. 조선 초기에는 이를 개복신(開福神) 초례(醮 禮)라 불렀데, 제사 장소로 태조 조에는 세자전 남문, 태종 조에는 궁궐 내, 세종 즉 위 이후로는 소격전이 활용되게 된다. ⁴ 성현(成俔)의 『용재총화』를 통해 권초지례 (捲草之禮)라는 용어가 세종 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초제의 경우 왕자는 소격전이, 공주는 내섬시가 주관하였다 한다. ⁵ 이 시기에는 도교 색채가 강했는데 이후 소격서가 혁파되면서 그 양식이 변화된다.

판본사항

형태서지

표제는 표지 우측에 "産室廳總規"라 되어있고, 좌측상단에 "乙亥釐正"의 기록이 있다. 좌측 하단에는 소장처의 장서표가 붙어있다. 필사본 1책으로 본문은 겹장 30장으로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있다. 본문은 계선이 있고, 10행 18자인데 주석은 쌍주로 되어있다. 상단 여백에는 본문의 쌍주보다 더 작은 글씨로 보충하는 내용의 필기가 있는데, 80여 곳에 이른다. 소장처의 서지에 따르면 책의 크기는 25.4×33.4cm이다. 7

소장처

원본의 소장처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다케다 과학진흥재단 내의 행우서옥(杏雨書屋)으로 청구기호는 杏-1914이다. 원래 의사학자 미키 사카에(三木榮)가 1928년 4월 22일 입수한 문헌으로 입수 내역은 소장처의 장서표에 나온다. 국내에선 1995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본을 영인하여 소장 중인데, 영인본의 청구기호는 古7657-1이다.

저술시기와 저자

저술시기

별도의 서문과 발문은 없으나, 표지에 "乙亥釐正"의 기록이 있으므로 을해년에 기존에 있던 문헌을 새롭게 바로잡아 고쳤음을 알 수 있다. 본문 내용에 "英宗朝庚午"가 나오는데, 이 영종은 영조로 개칭되기 이전 묘호로서, 『승정원일기』를 보면 1889년(고종 26) 12월에 개칭된다. 9 정조가 즉위한 1777년 이후 1889년 이전에 해당하는 을해년은 1815년과 1875년 두 해이다. 그런데 본문에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이 나오므로 고종 즉위 이후여야 한다. 따라서 본 문헌의 이정(釐正) 시기는 1875년(고종 12)으로 확정된다. 그렇다면 원 문헌의 저술 시기는 언제일까? 본문을보면 계선안의 글과 상단부 여백을 이용해서 추가된 글이 있는데, 자획이 달라 서로다른 시기의 글임을 알 수 있다. 이 둘을 나누어서 글 속의 간지를 살펴보면 상단부

에 추가된 글 속에선 을해년이 두 차례 등장하지만, 계선안의 원래 글에서는 갑술년이 하한이다. 특히 본문 말미에 대령서원 연봉인(延鳳仁)이 등장하는 1874년 2월 15일의 이문(移文)이 예시로서 그대로 전재되었다. 당시 산실청에서 태어난 이가 후일왕위를 계승하는 순종으로, 중궁전의 산실청은 2월 14일에 철거되었다. ¹⁰ 1875년산실청의 배설 또한 중궁전에 이루어졌는데,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배설되었다. ¹¹이로서 추정해보면 본 문헌은 순종의 탄생 이후(1874년 2월 14일 이후)처음 저술되었고, 1875년 4월 11일 이후에 일부 바뀐 사례를 토대로 추가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저자

본 문헌에서 저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산실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로 사용된 문서들을 볼 때, 내의원이 본원(本院)으로 지칭되므로, 내의원 내의 원역임은 확실하다. 이정(釐正)하면서 구체적으로 산실청 관련사안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1874년과 1875년의 산실청에 종사한 인물로 보인다. 12 두 산실청에 모두 종사했던 이는 도제조 이유원(李裕元)과 의관 홍현보(洪顯普), 이한경(李漢慶) 세 사람인데, 홍현보는 의관이지만 『해초문고(海初文稿)』와 『해초시고(海初詩稿)』를 남길 만큼 당대에 이름난 문인이었고, 이유원은 『임하필기』라는 방대한 문집을 남긴 이로, 철종 조부터 부제조로서 산실청에 종사했던 이다. 13 본 문헌의 저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정(釐正) 작업은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체제 및 내용

체제

이 문헌은 서문과 목차, 발문이 없으며, 내용상에도 조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2장 분량의 산실청범례와 28장 분량의 산실청총규는 제목을 두어 구분되어있 다. 범례에서는 문장 앞에 "一"을 두어 구별하고, 총규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범례와 총규 모두 같은 주제의 내용에선 두 번째 행에서 한 칸 들여쓰기를 하여 구분 한다. 또한 범례와 총규 두 원문 위에는 이정(釐正) 이후 추가된 필기가 있다.

내용

체제에 따라 범례와 총규, 추가된 필기로 그 내용이 구분할 수 있다. 범례의 꼭지는 11조인데 주제를 문서, 숙직, 문안과 물품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문서는 두 꼭지로 초기 형식 $(1)^{14}$, 세자빈궁 등 문서 형식(4), 숙직은 세 꼭지로 배설일이 아닐 때(2), 거동 시 숙직(5), 분만 후 입직(7), 문안은 두 꼭지로 문후 계사(啓辭) 방법(3), 제조 윤직(輪直) 때의 문안(6), 물품은 네 꼭지로 산도(産圖) 등의 제작법(8), 가장 자리를 잘라낸 빈 가마니(剪邊空石)(9), 권초함(捲草函)(10), 권초제 소용 물품(11)이 그 내 용이다. 그런데 초기 형식(1), 분만 후 7일 이내의 숙직은 교체하지 못한다는 내용(7) 등의 규정은 내용 일체가 총규에 따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하게 범례를 총규 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범례에서 중요한 규정을 다루고, 이와 별도 로 총규에서 부가적인 규정을 다루거나 중요 규정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한 셈이다. 총 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산실청의 배설과 철거까지 시간 순서대로 절차와 문안, 숙직 등에 대한 규정이다. 배설 이전 산실청의 택일, 원역의 차출, 배설일의 절차와 문안, 배설 이후 문안, 숙직 등의 규정, 분만일의 절차, 분만 이후 절차와 세욕(洗浴)과 세태(洗胎), 권초제의 절차가 그 내용이다. 둘째로 산실청 에서 소용되는 물품의 종류와 제작, 문서 양식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는 먼저 분산 실 내부에 그려지는 산도(産圖), 최생부(催生符), 차지접(借地法)의 실제 예와 그리 는 방법, 배설 시 분산실 내부와 외부에 소용되는 물품 종류, 분만 이후 세욕과 세태. 에 소용되는 물품 종류, 권초제 소용 물품, 서계와 별단서계 양식, 윤직(輪直) 때의

생기(省記) 등의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출관식(出關式)에 대한 설명으로 끝 맺는다. 추가된 필기에선 해당 규정이 생기게 된 과거 내역이나 원래 글과 이정(釐正) 시기 사이에 변동되어진 사항을 보충하게 된다.

결어

고종 초기 법전의 개정, 여러 제도의 보완과 정비는 관청의 기존 규정집을 개정할 필 요를 만들어내었다. 정조 때의 법전인 「대전통편」이 1865년 12월 「대전회통」으로 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조와 병조 조례집인 「양전편고(兩典便考)」가 간행되었 으며, 1866년 12월에는 육조(六曹) 관련 법전인 「육전조례」가 완성되었다. 이 시기 간행된 규정집으로는 승정원의 「은대조례(銀臺條例) ((1870년), 종친부의 「종친부 조례(宗親府條例) (1870년), 세자시강원의 「이원조례(离院條例) (1888년)가 있고, 필사본으로는 사헌부의 「사헌부장고(司憲府掌攷)」가 남아있다. 대원군의 집권기는 1864-1873년으로서 이 시기는 앞 문헌들의 간행시기와 대개 일치한다. 장유승은 고 종 조 법전 개정과 관청 규정집의 간행이 대원군의 집권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 는데, 대원군은 이들 문헌을 통해 종친부의 위상 강화에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 자 신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했다. 15 『산실청총 규』는 1874년 처음 쓰여서 1875년에 이정(釐正) 완성 되었으므로, 다른 규정집들의 편찬 시기보다 조금 늦으며 대원군 집정이 끝난 이후이다. 『산실청총규』에 운현궁 이 한 차례 언급되기는 하지만, 약물 수급에 관한 보충이다. 또한 종실 임명이 가능 했던 권초관을 政官으로 한정함으로서, 대원군 이전 시기의 규정으로 회귀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고종 조 산실청의 규정과 실제 모습을 이해함에 있어 일차자료로서 본 문헌의 중요성은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 1810년(순조 10)경에 저술된 『내 의원식례』의 설청(設廳) 조문 내용과 『임하필기』 권 28의 산실청관련 기록은 산실 청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는 면이 있다. 산실청, 호산청은 일기를 남겨 후세에 전례로 삼고자 했는데, 현재 산실청일기는 전하는 것이 없고 호산청일기만 4종이 전한다. 숙종 조 숙빈최씨 관련 3종과 영친왕 생모인 귀인엄씨의 호산청일기이다. 16 이 호산 청일기도 산실청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에 산과학은 구급의

학, 천연두 치료의학과 더불어 의학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누려왔다. 조선 전기 조선 인이 저술한 산과전문의서로는 1430년 이전 간행된 「산서(産書)」 1472년 경 간행된 「태산집요(胎産集要)」, 1434년 간행된 「태산요록(胎産要錄)」을 들 수 있다. 특히 조 선 전기 의과 과목 중 하나인 「태산집요(胎産集要)」는 전체 분량이 11책에 이르러 분과의학서로는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단순히 규모로도 조선 위정자들의 산과학에 대한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산실청은 조선 산과의학의 가장 높은 경지가. 투영되는 장소로서 여기에 규정으로서 언급되는 처방과 임상 술기들은 오랜 시간 경험에 의해 입증된 매우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차지법 등 미신적인 내용도 일부 존재하는데, 차지법은 「부인대전양방」, 산도(産圖)는 「산서집록(産書集錄)」에 서 조선 전기 의서에 인용된 것이 고종 조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는 임상 술기의 발 전과는 별개로 의학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앙의 영역으로 넘기는 오랜 관 습의 반영이라 하겠다. 최생부 등이 형태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500년을 전해졌다. 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실제 효과가 있기보다는 관습과 마음 위안의 산물임 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발달한 첨단 산과의학의 시대이 지만, 출산을 앞두고 행해지는 관습에 의한 여러 금기들과 간절한 기도는 오늘날의 최생부일 것이다.

<참고문헌>

國立文化財硏究所. 「국역 호산청일기」. 서울: 민속원 : 2007 : 12-13

권오민.「産室廳總規」: 金重權. 『선본해제 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2013 : 133-135

金性準. 『評譯 産室廳總規』. 서울: 민속원 : 2015 : 10-131, 186-244

朴薰平. 『譯註 內醫院式例』. 서울: 퍼플 : 2015 : 32-37

신명호. 「조선시대 宮中의 出産風俗과 宮中醫學」. 고문서연구 : 2002 ; 21 : 199-226

이강욱. 『은대조례』.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 2012 : 17-18, 258

國史編纂委員會. 承政院日記DB (http://sjw.history.go.kr)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韓國古典飜譯院.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1.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1810년 경)에서는 이조(吏曹)의 정이품 이상의 관원에서 차출했으나, 「은대조례(銀臺條例)」(1870년)에서는 종실과 조신 중에 有福人으로, 「산실청총규」에서는 政官을 패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朴薰平. 『譯註 內醫院式例』. 서울: 퍼플: 2015: 32, 이강욱. 『은대조례』.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2: 258. ↩
- ².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韓國古典飜譯院.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 ↔
- ³. 朴薰平. op, cit. p.36-37. ↔
- ⁴. 『태조실록』 태조 7년 윤5월 6일, 『태종실록』 태종 3년 2월 1일,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 9월 25일, 세종 2년 1월 13일 기사 ↔
- 5. 『용재총화』권2. 韓國古典飜譯院.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 ↔
- 6. 신명호는 시간에 있어 한 밤중에서 아침으로, 물품에 있어서도 의복류에서 命正銀, 命紬 등으로 바뀌었음을 밝혔다. 신명호. 「조선시대 宮中의 出産風俗 과 宮中醫學」. 고문서연구: 2002; 21: 199-226 ↔
- ⁷. 권오민.「産室廳總規」: 金重權. 『선본해제 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2013 : 133 ↔
- ⁸. 권오민. op. cit. p. 133 ↔
- ⁹. 『승정원일기』. 고종 26년 12월 5일 기사 ←
- ¹⁰.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2월 14일 기사 ↔
- 11.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3월 2일, 4월 11일 기사 ↔
- 12. 1874년 산실청의 원역 중에 내의원 관원은 도제조 李裕元, 제조 朴齊寅, 부 제조 李會正, 대령의관 洪顯普, 李漢慶, 朴時永, 全東爀, 별장무관 邊應翼, 별

입직의관 李慶年, 彭繼述, 鄭禮秀, 鄭在英, 李章爀, 洪翼普, 어의 劉漢緯, 침의鄭在寅, 의약동참 李好錫, 내의 金激等, 장무관 金在瑚이다. 1875년 산실철의원역 중 관원은 도제조 李裕元, 제조 朴齊寅, 부제조 金炳始, 어의 玄光宣, 金在瑚, 李命錫, 李基徹, 李慶年, 침의鄭光殷, 鄭昌祖, 대령의관鄭禮秀, 鄭在英, 洪顯普, 李漢慶, 별장무관 金溵, 의약동참 趙錫洪, 高鑂, 鄭一龜, 어의 李好錫, 장무관 崔性協, 鄭在晚이다.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2월 14일, 고종 12년 4월 11일 기사 참조. ↔

- 13. 『林下筆記』에는 1871년 배설된 산실청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어있다. 『林下筆記』 28권. 韓國古典飜譯院.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 ↔
- 14. 주제 뒤의 번호는 본문 상의 조문 순서이다. ↔
- ¹⁵. 이강욱. op. cit. p. 17-18 ↔
- 16. 國立文化財硏究所. 「국역 호산청일기」. 서울: 민속원 : 2007 : 12-13 ↔

※ 참고자료

* 작성자 : 박훈평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좋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 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는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임의제목:임의 제목표시
- 글자의 오류가 있는 경우 교감기로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 였다.
 - 예시) 湿 => 濕, 冝 => 宜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 ⑩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소주(小註)
 - { } : 양각
 - 【】: 음각
 - : 격자(隔字)
 - 제목설명: 제목에 대한설명문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산실청총규 産室廳總規

원저자 : 미상

국역 : 구자훈ㆍ한민섭

해제 : 박훈평

발행인 : 이혜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2월 10일

Renewal : 2019년 7월 31일

Renewal : 2020년 12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박상영(이)고 판본을 조사 · 수집한 이는 오준호 (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고 역자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이정 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 현희입니다.

copyright ©2016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 디자인 · 이미지 ·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 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K16670》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



10BN 376 65 5576 256 7 (1 B1)

ISBN: 978-89-5970-236-7